

“히토류에서 은까지” 핵심광물 무기화하는 중국 어떤 협상카드 쥐고 있나

[오피니언]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 현황과 향후 전망 (13p)

[관세 이슈]

AI에 품목분류 시키면 정확도 얼마나 될까 (18p)

[이주의 초점]

2025 무역통계 결산해보니...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25% (4p)

[위클리 뉴스]

“신통상질서 피해 기업도 특별 관리” 관세청
세정지원 대폭 확대

2025년 전국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역대 최대

“한적 물량 증가”

미,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 “경상수지·대미무역
흑자 이유” (8p)

[관세 행정]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제20류 주 규정)
(29p)

[품목분류 동향]

입안에 넣어 머금은 담배 ‘스누스(SNUS)’의
HS CODE (41p)



※ Chat GPT 생성 이미지

발행인 백형민

편집인 남성훈

총괄 김민정 mjk2413@kctdi.or.kr

취재 하구현 sendme95@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마케팅 손민기 smk0110@kctdi.or.kr

김진우 kjw@kctdi.or.kr

디자인 경성문화사

발행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일 2026년 2월 2일(통권 제2165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www.instagram.com/kctdi.official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C O N T E N T S

이주의 초점

- 04** 2025 무역통계 결산해보니...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25%

08 Weekly News

오피니언

- 13** 시선, 중국 통관
박진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대표(전문연구원)
“희토류에서 은까지” 중국 ‘핵심광물 무기화’ 수출통제 현황과 향후 전망

관세 이슈 분석

- 18** AI에 품목분류 시키면 정확도 얼마나 될까
- 범용 AI 기반 HS 검색엔진의 실태와 활용

관세행정실무해설

- 29** 관세행정안내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 (제20류 주 규정)
- 39** 질의응답사례
올레오레진의 HS Code

품목분류동향

- 41** 세번 바로잡기
스누스(SNUS)
-

2025 무역통계 결산해보니... 반도체가 전체 수출의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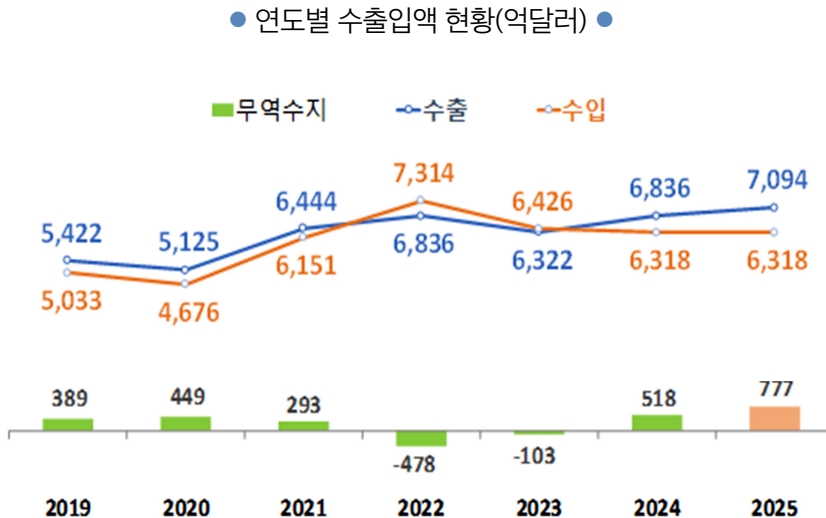
7,000억달러 수출 성과 기록, 관세 리스크 속에서 수출 회복력 증명

2025년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사상 최초로 연간 수출 7,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2018년 수출 6,000억달러 달성 이후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복합적인 악재를 겪으면서도, 불과 7년 만에 한 단계 도약을 이뤄낸 성과로 평가된다.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달성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은 1월 26일 2025년 수출입 통계를 품목·국가·지역·기업 등 8개 분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를 관통하는 5대 키워드로 ▲7,000억 달러, ▲미국 관세정책, ▲반도체, ▲K-기업의 저력, ▲수출시장 다변화를 제시했다. 이 다섯 가지 키워드는 2025년 한국 무역의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드러낸다.

■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7,000억달러 수출 달성

2025년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7,094억달러를 기록하며 연간 7,000억달러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수입은 6,318억달러로 소폭 감소하며 무역수지는 777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2017년 이후 최대 규모로, 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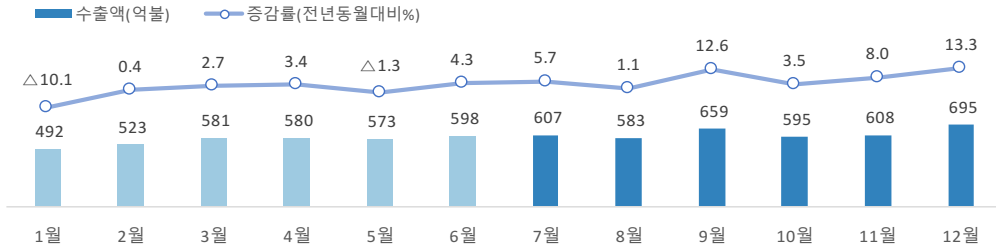
출처 : 관세청

연중 흐름을 보면 ‘상저하고’ 패턴이 뚜렷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정책과 글로벌 경기 둔화로 1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감소했지만, 6월 새 정부 출범과 10월 관세 협상 타결을 거치며 수출이 빠르게 회복됐다. 하반기 수출액은 3,747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12월에는 월간 기준 최대 실적인 695억달러를 달성하며 연간 기록을 완성했다.

■ 미국 관세정책, 최대 변수이자 시험대

2025년 무역 환경에서 가장 큰 변수는 단연 미국의 관세정책이었다. 상호관세 확대와 함께 철강, 자동차 등 한국의 핵심 수출품목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는 수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승용차 수출의 경우 최대 수출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

● 2025년 월별 수출 현황 ●



출처 :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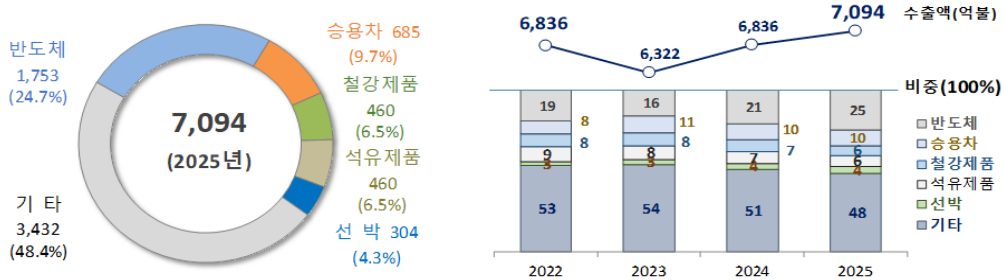
그러나 정부가 대미 관세 협상을 지속하며 불확실성 완화에 주력했고, 관세청은 3월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미대본)’를 출범해 기업들의 통관, 원산지, 관세 리스크 대응을 종합 지원했다. 기업들은 대미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수출 구조를 재편하며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대체시장 개척에 속도를 냈다.

■ 반도체, 2년 연속 큰 폭의 수출 증가세

2025년 한국 무역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다. 반도체 수출은 1,753억달러로 2년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전체 수출의 24.7%를 차지했다. AI,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에 힘입어 반도체는 명실상부한 ‘수출 엔진’ 역할을 했다. 주목할 점은 수입 구조에서도 반도체의 위상이 커졌다는 것이다. 반도체 수입액은 775억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원유를 제치고 최대 수입품목에 올랐다. 본격적인 AI 시대로의 대전환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

승용차는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관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EU와 캐나다 수출이 늘며 전체 수출 감소를 방어했다. 지난해 승용차 수출은 685억달러로 반도체에 이은 2위 수출품목이었다. 이는 개별 기업의 시장 대응 능력과 글로벌 생산·판매 전략의 유연성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 주요 품목별 수출(억달러, 비중%)(좌) & 주요 품목별 수출 비중(%)(우) ●



출처 : 관세청

■ 5대 주력 품목이 전체 수출의 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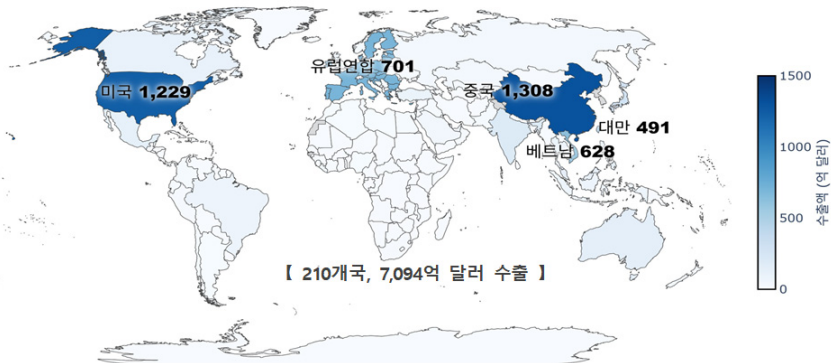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수출·수입기업 수는 모두 증가했다. 2025년 수출기업 수는 10만 2,000개로 전년 대비 2.3% 늘었고, 수입기업도 23만 6,000개로 2.1% 증가했다. 반도체, 승용차, 철강, 석유제품, 선박 등 전통적인 5대 주력 품목은 여전히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51.7%)을 책임지며 산업 경쟁력을 유지했다. 특히 반도체가 전년 대비 21.9% 증가했으며 승용차 0.3%, 선박 24.0% 증가하며 수출을 견인했다. 반면 철강제품은 4.5%, 석유제품은 9.4% 감소했다.

■ 수출시장 다변화, 구조적 리스크를 낮추다

2025년 또 하나의 특징은 수출시장 다변화의 가시적 성과다.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은 각각 1.7%, 3.8% 감소했지만, EU, 베트남, 대만 등으로의 수출이 이를 빠르게 대체했다. 동남아 수출은 전년 대비 12.8% 증가하며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EU 역시 사상 최대 수준을 달성했다.

이는 미·중 중심의 수출구조에서 벗어나 리스크를 분산하려는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10개국에 대한 수출 가운데 121개국에서 수출이 증가한 점도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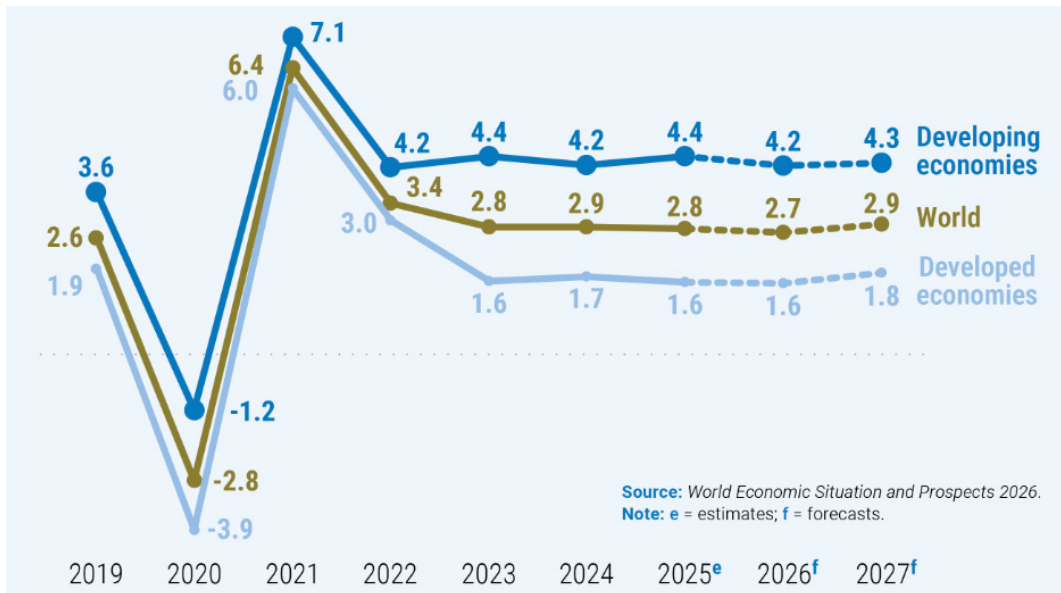
● 국가별 수출 현황(단위: 억달러) ●



출처 : 관세청

2025년 무역 통계는 한국의 수출이 여전히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특정 국가의 통상정책 변화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드러내며, 수출구조 고도화와 시장 다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시사한다.

수출 및 수입시장 다변화는 국제기구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DC 무역관은 1월 21일 'KOTRA 경제통상 리포트'를 발간하며, 유엔(UN)과 세계은행(World Bank)이 2025년 관세 충격 속에서 세계경제가 회복력을 보였다고 인정하면서도, 2026년에는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출처: UN 2026 세계 전망

UN은 올해 세계경제가 2.7%로 둔화, 2027년 2.9%로 소폭 반등할 것으로 봤다. 투자 둔화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무역 및 전반적인 성장세가 약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성장률 2.6%로 작년 대비 0.1%p 소폭 하락 후 2027년 2.7%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과 기업의 일시적인 재고 소진이 본격화하고 정책 불확실성의 여파가 미칠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세계은행은 보호무역 확산과 정책 불확실성이 세계 교역과 투자를 제약하고 있는 만큼, 무역 환경 개선을 위한 다자·양자협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AI·디지털 전환·친환경 산업 등 신기술 분야 투자 확대가 중장기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할 것이며, 무역 다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신흥시장 및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김성은 기자 |

※ 주간 관세무역정보 '위클리뉴스' 코너에서는 관세무역 관련 주요 뉴스를 요약 정리해 전해드립니다. 기사 전문 및 더 자세하고 다양한 관세무역 뉴스는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홈페이지\(www.kctdi.or.kr\)](http://www.kctdi.or.kr) > [관세무역동향](#)에서 매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 세정지원 대폭 확대... 신통상질서 피해 기업도 특별 관리

관세청이 국제 통상환경 변화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세정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신청 절차는 간소화하고, 집행 속도는 한층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관세청은 먼저 국정과제와 연계한 세정지원 대상 기업군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중소기업 중심의 지원에서 나아가 사회적기업, 재해·사고 안전 인증기업, 저출산 극복 정책과 연계된 가족친화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들이 관세 부담 완화를 통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세청은 신통상질서 대응 세정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나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업종을 대상으로 특별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미국의 관세정책과 관련해 고세율 적용 품목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해 현장의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재난과 산업 위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재난 발생지역과 산업위기 대응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신속하게 시행해, 위기 상황에 처한 기업의 자금 경색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정 절차의 편의성도 크게 개선된다. 그동안 세관 방문이나 이메일로만 가능했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은 2026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를 통한 원스톱 처리로 전환된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및 처리되도록 개선됐다.

아울러 과태료 납부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관세법」상 과태료의 납기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허용할 때 요구되던 '최근 2년간 수입실적' 요건을 폐지해 수입실적이 없는 영세기업이나 보세운송업자 등도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김성은 기자 |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 재심사로 적용세율 상향 적용한 사례 '국내 최초' 발생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던 물품을 재심사를 통해 인상된 세율을 적용한 국내 첫 사례가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인 중국산 PET 필름을 재심사한 결과 2개 공급업체에 대해 적용세율을 인상하기로 했다고 1월 26일 밝혔다. 우리 정부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던 물품을

중간에 재심사로 적용세율을 인상한 것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최초의 사례다.

덤핑방지관세 재심사란 덤핑방지조치 시행 이후 그 내용 변경이 필요한 충분한 상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재심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제도로 「관세법」 제56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재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오고 있으나,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업체 중 2개 공급업체의 경우 최근 국내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었다. 이에 코오롱인더스트리(주) 등 국내 기업은 2025년 2월 재경부에 재심사를 신청했으며, 무역위원회는 재조사를 거쳐 같은 해 12월 세율 인상을 재경부에 건의해 덤핑방지관세 적용세율을 상향하게 됐다.

재경부는 “국내산업 교란을 막고 우리 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속한 시정 조치”라고 이번 결정에 관해 설명했다.

| | 현행 덤핑방지 관세율(A) | 변경 관세율(B) | 인상폭(B-A) |
|---------------------------|----------------|-----------|----------|
| 1 캄웨이 및 그 밖의 관계사 | 2.2% | 7.31% | 5.11%p |
| 2 천진완화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 3.84% | 36.98% | 33.14%p |

이번 결정에 따라 캄웨이 및 그 밖의 관계사, 천진완화 및 그 기업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 시행일부터 각각 기존 2.2%, 3.84%에서 7.31%, 36.9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 하구현 기자 |

2025년 전국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역대 최대 “환적 물량 증가”

지난해 전국 항만의 총물동량이 소폭 감소한 가운데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적 물량 증가에 힘입어 컨테이너 처리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부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2% 증가한 2,488만TEU로 역대 최고 실적을 1년 만에 갈아치웠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총물동량이 15억 7,101만톤으로, 전년(15억 8,565만톤) 대비 0.9% 감소했다고 1월 30일 밝혔다. 수출입 물동량은 13억 4,125만톤(△0.7%), 연안은 2억 2,976만톤(△2.1%)으로 각각 집계됐다.

2025년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입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0.9% 감소한 1,753만TEU를 기록했으나, 환적 물동량이 1,441만TEU로 전년 대비 3.8% 늘어나 전체 물동량 증가를 견인했다.

국가별로는 중국(2.3%)과 일본(9.8%)과의 수출입 물동량이 늘어난 반면, 대미 수출입 물동량은 4.2% 감소해 전체 수출입 물동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주요 항만 가운데 부산항이 전년 대비 2.0% 증가한 2,488만TEU를 처리했다. 대미 물동량

이 소폭 감소(△0.2%)였는데도 중국(3.4%), 일본(3.7%) 물동량이 증가한 영향이다. 부산항의 수출입 물동량은 1,078만TEU로 1.1% 감소했으나, 환적 물동량이 1,410만TEU로 4.4% 증가했다. 수출입에서는 말레이시아(58.6%)와 일본(11.1%)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환적에서는 중국(5.0%)과 미국(5.6%)의 물동량이 늘었다.

● 전국 무역항 컨테이너 물동량(2025년) ●

(단위 : 1,000TEU, 전년 대비 %)

| 구 분 | 2024년 | 2025년 | | | | |
|-------|--------|-------|-------|-------|-------------|--------------|
| | | 10월 | 11월 | 12월 | 4분기 | 1~4분기 |
| 총물동량 | 31,735 | 2,577 | 2,665 | 2,725 | 7,966 | 32,109 |
| 전년 대비 | 5.3 | △3.8 | 2.7 | △0.2 | △0.5 | 1.2 |
| 수출입 | 17,685 | 1,333 | 1,447 | 1,523 | 4,302(△2.9) | 17,532(△0.9) |
| 환적 | 13,889 | 1,230 | 1,202 | 1,184 | 3,616(2.4) | 14,414(3.8) |
| 연안 | 162 | 14 | 16 | 18 | 48(20.2) | 163(1.1) |

반면, 인천항은 전년 대비 3.2% 감소한 344만TEU를 처리했다. 태국, 대만, 베트남 등과의 수출입 물동량 감소와 국제 통상 불확실성에 따른 중간재 교역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환적 물량 역시 미 관세 유예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선사의 항로 조정 영향으로 20.2% 줄었다.

품목별로는 차량 및 그 부품 물동량이 5.8% 증가한 반면, 유류·광석·유연탄·철강 등 주요 원자재 물동량은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성은 기자 |

미,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 “경상수지·대미무역 흑자 이유”

미국이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하며, 한국은 2024년 11월 이후 세 차례 연속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미국 재무부는 1월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에서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이번 평가에서 심층분석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1월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약 7년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트럼프 행정부 재출범 직전인 2024년 11월 다시 명단에 포함됐다. 이후 2025년 6월 보고서에 이어 이번 보고서까지 세 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미국은 교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 흑자 15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경상수지 흑자 ▲GDP의 2% 이상 및 8개월 이상 미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해당 기간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 흑자가 520억달러에 달했으며, 경상수지 흑자는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GDP의 5.9%라고 밝히며, “2025년 하반기 원화의 추가 약세는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원화가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약세를 보인 데 대한 미국 측의 문제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 환율보고서상 요건 및 한국 평가 결과 ●

| 미 교역촉진법상 평가기준(세부기준) | 한국 평가 | |
|---|--------|---|
| ① 현저한 대미무역 흑자(상품+서비스 흑자 150억달러 이상) | 520억달러 | ○ |
| ②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경상흑자 GDP 대비 3% 이상) | 5.9% | ○ |
| ③ 지속적·일방향 시장개입(8개월 이상+GDP 2% 이상 달러 순매수) | △0.4% | X |

또한 한국의 자본시장이 상당히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 등 제도 개선 노력이 외환시장의 회복력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투자기관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의 외화 매수가 해외투자 다변화 목적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간 외환스와프가 2024년 4분기 원화 변동성이 확대된 시기에 원화 약세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 하구현 기자 |

중기부, 고환율 부담에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제도 지원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29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고환율 애로점검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한 뒤, 고환율로 인한 경영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고환율로 인해 원·부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제조원가와 판매가격이 동시에 상승해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기부는 우선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집중될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 상환 만기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율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상환 여력이 부족한 기업의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환율 충격이 기업 경영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환리스크 정책 지원도 대상을 넓힌다. 중기부는 15개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제공해 온 환리스크 상담과 교육을 수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내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환율 변동에 따른 원가 상승을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간 1,000건 규모의 ‘납품대금 연동약정 컨설팅’을 통해 수입 원자재의 연동약정 체결을 확산할 예정이다. 연동제 우수기업에 수·위탁 거래 관련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원가 상승에 특히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 지원도 병행된다. 중기부는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경영안정바우처를 최대 25만원 한도로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만 6,000개사를 대상으로 스마트기술 보급을 지원해 비용 절감과 경영 효율화를 돕는다.

중기부는 전국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고환율 관련 현장 애로를 상시 파악하고, 수집된 의견을 관계부처에 신속히 전달해 환율 대응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 김성은 기자 |

ASEAN 등 해외 재외공관 30곳 지정 “K-푸드 수출플랫폼 역할”

농림축산식품부와 외교부는 2026년 ‘K-푸드 수출 거점 재외공관’ 30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국정과제인 ‘세계시장으로 뻗어가는 K-푸드’와 지난해 12월 발표된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전 세계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총 43개 공관 가운데 권역별 수출 증가율과 파급효과, 유망·잠재시장으로의 시장 다변화 가능성, 공관의 사전 준비도와 유관기관 협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30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공관은 주력시장과 신흥·잠재시장을 고르게 아우른다. 미국·중국·일본 등 기존 주력 시장에 5개소, ASEAN·유럽·중양아시아·중동 등 유망시장에 17개소, 오세아니아·중남미·아프리카 등 잠재시장에 8개소가 지정됐다.

K-푸드 거점공관은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현지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 공관은 관할 지역의 농수산물유통공사(a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문화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바이어·유통업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현지 시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할 계획이다.

또 비관세장벽과 식품 관련 규제, 소비 트렌드 등 실무적인 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하고, 통관·검역 애로 해소와 위조·모방품 대응, 현지 유통망 발굴을 지원한다. 현지 유력 인사와 인플루언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K-푸드 홍보 활동도 공공외교와 연계해 추진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K-푸드 거점공관은 정부의 K-이니셔티브 기조 아래 경제와 문화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역량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K-푸드 인지도를 높이고, 우리 기업의 수출 성과로 이어지는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도 “지정된 공관의 80% 이상이 ASEAN·유럽·중동·중남미 등 유망·잠재시장에 위치해 K-푸드 수출시장 다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공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출 애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K-푸드 수출 거점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문화·뷰티·패션 등 다른 분야의 K-이니셔티브와 연계한 융복합 마케팅도 강화해 K-푸드의 글로벌 도약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김성은 기자 |

시선
중국
통관

2026년 1월초 중국이 일본을 대상으로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시행하면서 중국의 '핵심광물 카드'에 다시 한번 이목이 집중됐다. 미국이 '고율 관세 부과'로 위협할 때마다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강력한 협상도구인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카드로 꺼내 들었다.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 근무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박진희 전문연구원이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 현황을 정리했다.

“희토류에서 은까지” 중국 ‘핵심광물 무기화’ 수출통제 현황과 향후 전망



박진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대표(전문연구원)

중국은 2023년 8월 갈륨, 게르마늄 및 그 화합물을 수출할 경우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수출통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자국이 생산을 주도하는 핵심광물자원, 첨단산업 소재와 기술을 중심으로 수출통제를 강화해 왔다.



출처 : 중국은 2026년 1월부터 은에 관해 수출 허가제를 시작했다.

2023년 12월에는 이차전지 음극재에 사용되는 흑연에, 2024년에는 반도체·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안티몬, 초경질 재료 관련 17개 품목에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된 2025년에는 수출통제를 더욱 강화해 텅스텐을 포함한 5개 광물과 중·중(中·重) 희토류¹⁾ 12종 등에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다.

특히 10월 9일에는 중국 상무부가 수출통제 관련 공지를 하루에 5건이나 연달아 발표하면서, 희토류 전 산업사슬과 관련된 기술과 설비, 원부자재 등에 전방위적으로 수출 허가제를 도입할 것이라 공표하기도 했다. 10월 9일의 수출통제 조치는 같은 달 말 부산에서 이뤄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트럼프 미국 대통령 회동 후 2026년 11월까지 시행이 유예됐으나, 중국은 작년 12월 말에도 AI 데이터센터, 전기차 배터리 등에 사용되는 은(銀)에 25년간 지속해 온 수출 할당제(쿼터제) 대신 수출 허가제를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44개 업체에만 은 수출을 허용한다고 발표하는 등 수출통제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²⁾

● 최근 중국의 주요 수출통제 조치 ●

| 일시 | 수출통제 조치 |
|----------|--|
| 2023.8. | • 갈륨, 게르마늄 및 그 화합물에 수출 허가제 도입 |
| 2023.12. | • 이차전지 음극재용 천연흑연과 인조흑연에 수출 허가제 도입 |
| 2024.7. | • 항공우주, 가스터빈 엔진, 우주복 페이스 관련 장비·소프트웨어·기술,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관련 품목에 수출 허가제 도입 |
| 2024.8. | • 안티몬, 초경질 재료 관련 품목 및 기술에 수출 허가제 도입 |
| 2024.12. | • 미국에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 관련 이중용도품목(민·군 겸용 가능 품목) 수출 금지, ▲흑연 관련 품목의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엄격 심사 * 2025년 11월 시행 중단(2026년 11월 27일까지) |
| 2025.2. | •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관련 품목 및 기술에 수출 허가제 도입 |
| 2025.4. | • (희토류 7종)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가지 중·중(中·重) 희토류 관련 제품에 수출 허가제 도입 |
| 2025.10. | • (희토류 기술 및 지식재산) ▲희토류 핵심 공정기술(채굴, 제련·분리, 금속 제련, 자성재료 제조, 재활용 등) 및 그 운반체(설계도면, 공정규범 등), ▲관련 기술서비스(생산라인 조립, 시운전,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등), ▲기타 해외 희토류 관련 활동에 사용되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기술은 수출 시 중국정부의 수출 허가 필요 * 2025년 11월 8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6년 11월 10일까지 시행이 중단됨. • (희토류 설비 및 원부자재) 희토류 생산·가공에 필수적인 원심 추출장비, 영구 자석용 진공 소결로, 모나자이트 등 수출 시 중국정부의 수출 허가 필요 * 2025년 11월 8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6년 11월 10일까지 시행이 중단됨. •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적용 ①) 해외기업·개인이 중국산 희토류(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 |

1) 희토류는 원자량에 따라 경·중·중(輕·中·重)으로 구분된다.

2) 은은 이중용도품목으로 분류된 갈륨, 텅스텐, 희토류 등이 '수출통제법'에 따라 보다 엄격한 최종사용자 및 용도 심사 허가를 거치는 것과 달리, 수출자격 및 수출계약 위주의 상대적으로 단순한 심사 허가를 받았다. 무역안보관리원(2026.1.2), '中 상무부, 은 수출관리제도 개정'.

| 일시 | 수출통제 조치 |
|----------|--|
| | <p>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등) 및 이를 활용해 생산한 영구자석·타깃 재료를 중국 외 국가로 수출 시 중국정부의 수출 허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10월 9일 바로 시행됐으나, 2026년 11월 10일까지 시행이 중단됨. •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적용 ②) 해외기업·개인이 해외에서 제조한 ▲중국산 희토류(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등) 성분 0.1% 이상 함유된 영구자석·타깃 재료, ▲중국의 희토류 채굴·제련, 재활용 기술 사용 제조 제품을 중국 외 다른 국가로 수출 시 중국정부의 수출 허가 필요 * 2025년 12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6년 11월 10일까지 시행이 중단됨. • (희토류 5종) 홀륨, 어븀, 토륨, 유로퓸, 이터븀 등 중·중 희토류 5종에 수출 허가제 도입 * 2025년 11월 8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6년 11월 10일까지 시행이 중단됨. • ▲반도체 웨이퍼 연마 및 절삭, 정밀기계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합성 다이아몬드 소재 및 부품, ▲고밀도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 중간재(양·음극재) 주요 장비 및 기술에 수출 허가제 도입 * 2025년 11월 8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6년 11월 10일까지 시행이 중단됨. |
| 2025.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넥스페리아(네덜란드 범용 반도체 생산 기업)의 중국 내 공장·하청업체의 수출 금지 * 2025년 11월 수출 금지에서 수출 허가제로 완화 |
| 2026.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銀)의 수출 할당제 폐지 및 수출 허가제 도입, 중국정부 지정 44개 기업만 수출 허용 |
| 2026.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에 이중용도품목 수출 금지 |

자료: 중국 상무부 공고(www.mofcom.gov.cn),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2025.10.31.), 중국의 핵심광물 수출통제 강화 조치 분석 및 시사점, 무역안보관리원 동향자료(www.kosti.or.kr) 및 언론기사 등을 참고해 작성.

중국의 수출통제는 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정 국가를 겨냥하기도 한다. 2024년 12월 미국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및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수출통제를 발표하자, 중국은 2023~2024년에 수출허가 품목으로 지정했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 관련 품목의 대미국 수출을 금지하고, 흑연 관련 품목은 미국 수출 시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를 엄격히 검토할 것이라 공표했다.

또한 중국은 2026년 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有事)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응해, 일본에서 군사용으로 사용되거나 군사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민간용으로도, 군사용으로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물자)의 대일본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정부는 어떤 품목이 수출 금지 대상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작년 말 발표한 '2026년 이중용도품목·기술 수출입통제 목록(2026年度《两用物项和技术进出口许可证管理目录》)'³⁾에는 텅스텐, 갈륨, 흑연 등 중국이 그동안 수출통제 조치를 취해 온 핵심광물자원과 희토류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통제가 이뤄질 것이라 예상된다. 최근 일본에 희토류를 수출하는 기업들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구매 기업, 제조하는 최종 제품, 운송 경로 등의 정확한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등 이전보다 희토류 수출이 엄격해졌다.⁴⁾

3) 중국 상무부가 매년 연말에 발표하는 것으로 다음 해에 어떤 품목을 수입·수출 통제(중국정부 허가 의무화)를 할지 안내하는 목록이다. 발표 시점에 새로운 품목을 지정해 공표하는 것은 아니고, 그 한해 동안 수입·수출 통제 품목으로 추가 지정됐던 품목들을 전년 목록에 업데이트한 것이다.

중국 수출통제 조치의 특징 “효과적인 협상 수단으로 운용”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는 ‘수출통제법(中华人民共和国出口管制法)’과 같은 확고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임의적이고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합법적 국가 행위로 제도화된 것이다.⁵⁾ 중국은 2020년 수출통제법을 제정·시행해 수출통제의 목적(국가안보와 이익 수호, 비확산 등 국제의무를 이행)과 대상(이중용도품목, 군수품, 핵 및 국가안보와 이익 수호 등과 관련된 물품, 기술, 서비스, 데이터도 포함), 관리감독 방법 및 법적 책임 등을 명시함으로써, 여러 법규에 분산돼 있던 수출통제 체계를 하나의 법률 체계로 통합·정비했다.

또한 중국은 2024년 10월 수출통제법의 하위 법규에 해당하는 ‘이중용도 수출통제 조례(两用物项出口管制条例)’를 공표해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정의, 통제 조치 및 처벌 조치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11월에는 통제 대상 품목을 리스트업한 ‘이중용도품목·기술 수출입통제 목록’을 발표했다.⁶⁾ 이어 2025년에는 이들 법·조례에 맞춰 수정 보완한 ‘이중용도 수출허가증 관리방법(两用物项出口许可证管理办法)’을 공표해 관련 품목을 수출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유효기간과 특수 상황별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등의 실무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이와 같이 통합·정비된 법제도가 있기에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제재를 실시한 지 하루 만에 중국이 이에 대응해 신속하게 갈륨 등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⁷⁾

중국은 상황 변화에 따라 통제 조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거나 일시적으로 유예하면서 수출통제를 효과적인 협상 수단으로 운용하고 있다. 2025년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가 이를 잘 보여준다. 트럼프의 대중국 고율 관세 부과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고조되자 중국정부는 우선 중·중 희토류 7종 및 이와 관련된 ‘제품’에 대한 수출통제(수출 허가제 도입)를 실시했다. 6개월 뒤 중국은 희토류 관련 ‘공정기술 및 관련 서비스’, ‘설비 및 원부자재’로까지 수출통제를 확대했고, 중국이 아닌 지역에서 중국산 희토류와 기술이 포함된 제품을 다른 국가로 수출할 때도 중국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역외적용’ 조치도 시행했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강화된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는 10월 30일 미·중 정상회담 후 미국이 대중 관세를 인하하고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통제를 유예하는 것에 호응해 바로 2026년 11월까지 1년 유예됐다.⁸⁾

향후 전망 “첨단산업 공급망 겨냥 전략물자 수출통제 상시화”

중국은 강화해 온 법·제도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수출통제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며 글로벌 무역에서 자국에 유리한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이다.

4) 한겨레(2026.1.18.), ‘중국, 희토류 일본 수출허가 심사 강화 … 일 기업들, ‘선적 중단’ 우려’.

5) Foreign Affairs(2025.12.16.), ‘China’s Long Economic War’.

6) 앞의 각주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4년 이래 매년 업데이트한 목록(리스트)을 발표하고 있다.

7) 무역안보관리원(2025.12.31.), ‘중국 수출통제 메커니즘 현황 및 대응방안’; KOTRA 베이징 무역관 세미나 발표자료(2025.11.13.), ‘통상환경변화에 따른 중국 수출관리제도 현황과 대응전략’.

8) The Diplomat(2026.1.17.), ‘China’s Multilayered Approach to Rare Earths Under US-Led Decoupling’; 무역안보관리원(2025.12.31.), ‘중국 수출통제 메커니즘 현황 및 대응방안’.

올해 11월까지 유예한 중·중 희토류와 고밀도 리튬이온 배터리 등에 대한 수출통제, 갈륨·게르마늄·흑연 등 핵심광물의 대미국 수출금지 조치 역시 미국의 향후 행위에 따라 재개될 수 있다. 중국 상하이 의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송귀유(宋国友) 교수는 지난해 11월 수출통제 유예 조치 발표 후, “주도국인 미국이 미·중 간 합의를 쉽게 깨뜨리지 말아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은 이에 상응하는 대응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⁹⁾

더욱이 중국이 경제안보를 국가의 핵심이익과 지속적으로 연결 지음에 따라 첨단산업과 관련된 전략물자 수출통제가 더 빈번해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작년 5월 발표한 ‘국가안보백서(新时代的中國國家安全白皮書)’에서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권, 통일과 영토 보전’ 등과 함께 국가의 핵심 이익으로 꼽았다. 또한 20년 만에 전면 개정된 ‘대외무역법(中華人民共和國對外貿易法, 올해 3월부터 시행)’에서도 수출통제의 법적 근거로 “발전이익을 해치는 것”을 명시했는데, 이는 군사적 위협이나 전통적 안보 위협뿐만 아니라 자국의 산업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수출통제를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¹⁰⁾

지금까지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한 핵심광물, 중·중 희토류 등 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에 중국정부가 추가적으로 통제조치를 취할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는 **최근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생산 비중이 높아 수출 통제 시 미국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품목으로 API(원료의약품), 인쇄회로기판(PCB), 레거시 반도체(foundational semiconductor) 등을 꼽았고, 일부에서는 마그네슘, 티타늄과 같은 광물이 무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¹¹⁾ 최근 수출허가제를 도입한 은 역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 2위, 정제능력의 60~70%를 차지하며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전반에서 필수 소재로 쓰인다는 점에서 향후 희토류와 같은 협상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¹²⁾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기업은 중국의 수출관리제도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이 매년 발표하는 이중용도품목·기술 수출입통제 목록을 점검하고, 중국 상무부 수출입통제국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해 수시로 변경, 추가되는 품목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수출하려는 품목이 중국의 수출통제 적용 대상인지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무부의 공식 플랫폼을 통해 자문을 신청할 수도 있다.¹³⁾ 동시에 리스크 완화를 위해 중국 의존도가 큰 전략 물자들은 생산·공급·수출망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9) 澎湃新聞(2025.11.10.), ‘元首會晤後中美連續釋放經貿緩和信號, 專家: 美方勿輕易打破共識’.

10) 지평 법률정보(2026.1.5.), ‘중국 대외무역법 전면 개정: 능동적 경제안보 체제로의 전환과 시사점’.

11)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2025.11.), ‘2025 Report to Congress’; Time(2025.10.16.), ‘China’s Wild Card in the Trump-Xi Summit’.

12) 주간동아(2026.1.6.), ‘제2의 희토류’ 카드로 은 수출 통제 꺼내는 중국’.

13) KOTRA 베이징 무역관 세미나 발표자료(2025.11.13.), ‘통상환경변화에 따른 중국 수출관리제도 현황과 대응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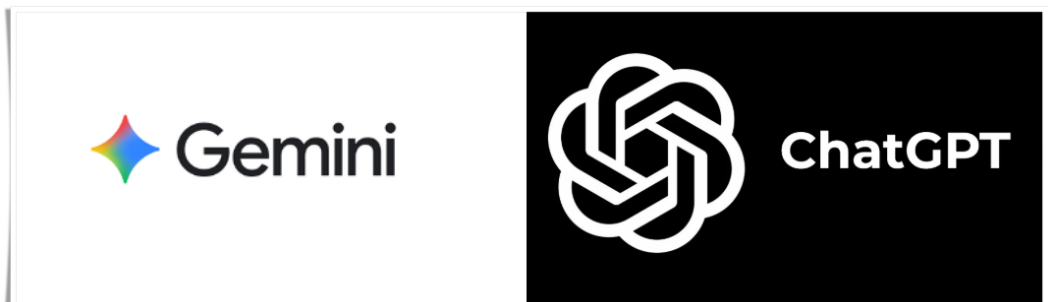
AI에 품목분류 시키면 정확도 얼마나 될까

범용 AI 기반 HS 검색엔진의 실태와 활용

오 수 교 | 관세법인 에이원

품목분류원산지 연구소장(전 중앙관세분석소장)

1. 시작하면서



최근 화두는 단연 인공지능(AI)이다.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은 AI를 얼마나 잘 활용할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한 말이 아닐 것이다. AI는 저비용으로 신속하고 쉽게 일 처리가 가능하지만, “내 책상도 불안하다. AI 일자리 쇼크 시작”이라는 어느 매체의 머리기사와 같이 우리를 직장에서 내모는 악마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¹⁾.

지난해 11월 발표된 관세무역 게임체인저 ‘AI 에이전트’라는 글²⁾에서,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는 갈라 다이내믹스의 AI 플랫폼으로 3만개 부품의 관세 분류 작업을 수행했다. 기존에는 10명이 180일 걸렸던 작업을 1명이 하루 만에 완료하며 비용을 최대 99.9% 절감했다. 또한, 위레이저는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축해 HS Code 분류 정확도 99.4%, 처리 시간 24시간에서 10초로 단축하는 등 성과를 냈다고 발표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 글에서 AI의 HS Code 분류 정확도가 99.4%라고 했으나, 어떤 물품에 관해 질문하느냐에 따라 정확도는 달라질 것이고, AI가 답변한 HS Code가 맞는지 검증하는 시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는 아쉬움이 있다. 다만, 정확성은 차치하더라도 AI가 획기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는 수긍한다. HS Code의 분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규정을 찾아주고, 경합 품목번호를 비교 검토한다는 점 등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관세사나 무역업계 종사자들이 범용 AI를 기반으로 한 HS 검색엔진(이하 ‘AI’라 한다)

1) 로이터통신이 “아마존 사상 최대 규모 3만명 감원 단행”이라고 보도했듯이, 최근 법률이나 회계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현장 곳곳에서 AI로 인한 감원 및 신규 직원 채용 중단 현실을 보도하는 기사는 넘쳐난다.

2) 이석문의 관세인사이드(한경비즈니스 2025.11.29.)에서 인용했다.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러한 AI가 얼마나 정확하고 유용한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를 소개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2. 품목분류의 정확성 검증방법 및 결과

검증방법은 필자가 관세율표 전반에 걸쳐 난이도를 고려해 난이도 상·중·하의 3가지 유형으로 작성한 60개 문항³⁾의 62개 물품을 A와 B⁴⁾에 동시에 질의해 답변한 HS Code만을 정성적으로 비교 검증(기간은 2025.12.1.부터 2025.12.15.까지)했다.

난이도 상에 속한 문항은 호의 용어나 주 규정에서 예외로 규정한 물품, 여러 주 규정을 동시 확인해야 하는 물품이나 분류 기준을 숫자로 규정한 물품 또는 HS 해설서에서 세부적인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으로 했다. 난이도 중은 호의 용어와 주 규정을 모두 적용해야 하는 물품으로 하고, 난이도 하는 호의 용어에 표기한 물품이나 HS 해설서에 분류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한 물품으로 했다.

60개 문항 62개 물품 검증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6단위 소호의 답변 수가 4단위 호(Heading)보다 6개 적은 이유는 질문 문항 외에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야 분류가 가능한 것은 제외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10단위는 응답률과 정답률이 매우 낮아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의 HSK를 사용하는 예도 있었다.

● AI 제공 HS 정답률 비교표 ●

| 구분 | 4단위 호(Heading) | | | 6단위 소호(Sub-Heading) | | |
|----|----------------|------|-----|---------------------|------|-----|
| | 답변 수 | 정답 수 | 정답률 | 답변 수 | 정답 수 | 정답률 |
| A | 62 | 36 | 58% | 56 | 24 | 43% |
| B | 62 | 43 | 69% | 56 | 32 | 57% |

3. 공통 오류 10개 물품의 정답 해설

호(Heading) 기준으로 A와 B가 모두 틀린 물품이 총 10개였다. 이들의 정답 해설을 통해 AI의 실태와 오류 원인을 추론해 사용자가 정확도를 높일 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

(1) [문항 기의 금 합금(금 80%, 백금 20%로 구성)으로 만든 1,000g의 압연한 바(bar)를 제7108호(금)로 답했다.

정답은 제7110호(백금)다. 왜냐하면 제71류 주 제5호 가목에서 “백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2% 이상인 것은 백금의 합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나목을 보면 금의 합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이유가

3) 주로 관세 자격 관련 시험에 출제될 수 있거나 실무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는 문항을 선정하고, 몇 개는 가상의 물품을 문항에 담았다.

4) 최근 가장 많이 사용하는 AI는 챗GPT와 제미나이다. 원고에는 임의로 A와 B로 표시했다.

명확하다. 그런데 B는 해당 주 규정과 달리 “백금 함유량이 2% 이상이라 하더라도 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금으로 우선 분류되는 경향이 있다”고 잘못 근거를 제시했는데, 추론하면 특례 주 규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통념에 의존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문항 12]의 자동적재장치를 갖춘 트럭(트럭 화물칸에 회전기중기가 장착)을 제8705호(특수용도 차량(기중기))로 답했다.

정답은 제8704호(화물자동차)다. 제8705호 HS 해설서 “기중기차(crane lorry)(트럭)는 화물의 수송 용이 아니며, 운전석과 회전기중기가 고정 장착된 자동차 새시(chassis)로 구성된다. 그렇지만, **자동적재장치를 갖춘 차(트럭)는 제외한다(제8704호)**”라는 규정에 근거한 답이다.

| 문항 | 질문 내용 | A | B | 정답 | 근거·이유 |
|----|--|--------|---------------|--------|---------------|
| 7 | 금 합금(금 80%, 백금 20%로 구성)으로 만든 1000g의 압연한 바(bar) | 제7108호 | 제7108호* | 제7110호 | 제71류 주 제5호 가목 |
| 12 | 자동적재장치를 갖춘 트럭 (트럭 화물칸에 회전기중기가 장착) | 제8705호 | 제8705호 제8426호 | 제8704호 | 제8705호 용어·해설서 |

* 금 합금 : 합금 중 금의 함유량이 중량의 2% 이상인 경우, 다른 귀금속(백금, 은 등)이 섞여 있더라도 금의 합금으로 분류합니다(단, 백금 함유량이 2% 이상이어도 금이 포함되어있다면 금으로 우선 분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 [문항 25]의 비행장 활주로에 설치되는 전기기계식 신호기기를 제8539호(A), 제8530호(B)로 답했다.

정답은 제8608호[비행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신호기기]다. 전기식이면 제8530호가 맞지만, 해당 호에서 제8608호의 것은 제외되며, 제8608호의 용어에 ‘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론하면 제8530호의 제외 규정(제8608호 관련)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제8539호(램프)는 전기기계식 신호기기를 구성하는 일부 부분품에 불과하다.

(4) [문항 29]의 가황하지 않은 천연고무 라텍스 폼(foam)을 쿠션 커버의 내장물에 맞도록 타원형 모양으로 성형·절단한 것을 제4008호(A), 제4001호(B)로 답했다.

정답은 제4006호(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과 제품)다. 가황하지 않았기에 제4008호로 분류할 수 없고, 타원형이라 제4001호로도 분류할 수 없다. HS 해설서 제40류 총설과 제4006호(C)-(3)항에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된 것은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한다고 예시하고 있다. 아직 HS 해설서의 세부 규정까지 파악해서 정답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 우문현답/실무적 관점에서 검증

B에게 관련 규정을 학습시키니, 제4006호가 맞다는 답을 제시하면서 추가로 실무상 매우 중요한 체크포인트라 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줬다.

사용자님께서 “가황하지 않은 것”이라고 명시하셨지만, **실제 수입/유통되는 ‘라텍스 폼(Latex Foam)’**은 99% 이상이 **가황 공정(Dunlop 공정이나 Talalay 공정)**을 거칩니다.

“가황을 안 한 라텍스 액체 : 끈적거리는 액체 상태”이며 “라텍스 ‘폼(Foam)’” : 기포를 넣고 열을 가해 짜내는 과정에서 반드시 가황(황 성분 등에 의한 분자 결합)이 일어난다. 가황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쿠션감 있는 스폰지’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녹아내리거나 형태가 무너진다.

우문현답이다. 제시한 내용이 맞다. 실제 상업적으로 거래되는 라텍스 폼(foam)은 가황한 것이어야 한다. 가황한 것이라면 타원형이란 이유로 제4016호(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로 분류한다. 어찌 됐든 초기의 답은 모두 틀렸다. 그러므로 ‘현문현답(賢問賢答)’을 얻으려면 사용자의 정확한 질문과 검증이 필요하다.

| 문항 | 질문 내용 | A | B | 정답 | 근거·이유 |
|----|--|----------------------|----------------------|----------------------|------------------|
| 25 | 비행장 활주로에 설치되는 전기식과 전기기계식 신호기기 | ① 제8539호 ② 제8539호 | ① 제8530호 ② 제8530호 | ① 제8530호 ② 제8608호 | 호와 소호 용어 호 용어 |
| 29 | 가황처리하지 않은 천연고무 라텍스 폼(foam)을 쿠션커버의 내장물에 맞도록 타원형 모양으로 성형/절단한 것 | 제4008호 | 제4001호 | 제4006호 | 호 용어 |

(5) [문항 35]의 전분 함유량은 56%이고, 회분 함유량은 1.0%로 500마이크론 금속망 체를 통과(2mm)의 금속망체에는 100%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80%인 옥수수가루를 제1102호(고운 가루)로 답했다.

정답은 제1103호(거친 가루)다. 우선 제1102호로 분류하려면 제11류 주 제2호 나목에 근거해 500마이크론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0%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앞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2mm의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5% 이상이면 제1103호(같은 류 주 제3호 가목),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두 개의 주 규정을 파악하지 못한 오류로 추론한다.

(6) [문항 37]의 닭고기 30%, 연어 45%의 비율에 감자와 당근, 조미료를 첨가해 볶은 것을 500g 캔에 진공포장한 식품을 제1602호(육의 조제 식료품)로 답했다.

정답은 제1604호(어류의 조제 식료품)다. 제16류 주 제2호에서 “육이나 어류 등의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는 연어(어류)가 중량이 큰 성분으므로 제1604호에 해당한다. 해당 주 규정에 명확히 언급한 사항으로 평이하게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수준인데 A와 B 모두 잘못된 답을 제시하는 것으로 봐 해당 주 규정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문항 | 질문 내용 | A | B | 정답 | 근거·이유 |
|----|---|--------|---------|--------|-------------------|
| 35 | 전분 함유량은 56%이고, 회분 함유량은 1.0%로 500마이크론 금속망체를 통과(2mm)의 금속망체에는 100%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80%인 옥수수가루 | 제1102호 | 제1102호* | 제1103호 | 제11류 주 제2호 제3항 가목 |

| 문항 | 질문 내용 | A | B | 정답 | 근거·이유 |
|----|---|--------|--------|--------|------------------|
| 37 | 닭고기 30%, 연어 45%의 비율에 감자와 당근, 조미료로 볶은 것을 500g 캔에 진공포장한 식품(수프나 브로드는 아님) | 제1602호 | 제1602호 | 제1604호 | 제16류 주 제2호 소호 용어 |

* 분쇄 정도 기준(제11류 주 제2호 나뭇) 곡물가루의 중량 80% 이상이 500마이크론 금속망체를 통과해야 합니다. 제시된 물품의 분쇄 정도: 500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 중량 비율: 80% 충족

(7) [문항 38]의 쇠고기 21%에 감자 35%와 당근 15%, 양파 10%, 물 10%, 조미액 9%의 비율로 끓여서 조리한 이유식을 순중량 500g 캔에 진공포장한 물품을 제1901호(A), 제2005호(B)로 답했다.

정답은 제1602호(육의 조제 식료품)다. 제16류 주 제2호에 따르면 육이나 어류 등의 함유량이 20%를 초과하면 제16류로 분류한다. 상식적으로 감자 등 채소가 총 60%를 차지해 채소의 조제품(제2005호)으로 볼 수 있지만, 제20류 제외규정 주 제1호 다목에서 이 같은 물품은 제16류로 분류한다는 점도 간과한 것으로 추론한다. 또한, 이유식이지만 제2104호의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으로 분류할 수 없는 이유는 제21류 주 제3호에 따라 순중량이 250g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제1901호는 전혀 관계없지만, 제19류 주 제1호 가목에서 제16류로 분류하도록 제외규정이 마련돼 있다.

(8) [문항 44]의 실크(silk) 100%의 날염직물(printing fabric)을 정사각형 크기(각 변 55cm)로 재단하고 가장자리를 봉제해 만든 스카프를 제6214호(스카프)로 답했다.

정답은 제6213호(손수건)다. 제62류 주 제8호에서 “스카프라 하더라도 각 변의 길이가 60cm 이하인 것은 손수건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해당 주를 검토하지 않고 스카프라고 해서 제6214호로 분류한 것으로 추론한다.

이러한 주 규정을 학습시키니 A는 “크기가 작으면 스카프처럼 보여도 손수건으로 강제분류한다. 주(Notes)가 호(Heading)보다 우선하는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⁵⁾.

| 문항 | 질문 내용 | A | B | 정답 | 근거·이유 |
|----|---|--------|--------|--------|-----------------------|
| 38 | 쇠고기 21%에 감자 35%와 당근 15%, 양파 10%, 물 10%, 조미액 9%의 비율로 끓여서 조리한 이유식을 500g 캔에 진공포장한 물품 | 제1901호 | 제2005호 | 제1602호 | 제16류 주 제2호 제21류 주 제4호 |
| 44 | 실크(silk) 100%의 날염직물(printing fabric)을 정사각형 크기(각 변 55cm)로 재단하고 가장자리를 봉제해 만든 스카프 | 제6214호 | 제6214호 | 제6213호 | 제62류 주 제8호 |

(9) [문항 51]의 자전거 전용 신호용 기구(예: 전기식 벨)는 제8714호(A), 제8531호(B)로 답했다.

정답은 제8512호(자전거용의 전기식 신호용 기구)다. 이 문항은 호의 용어만으로 분류할 수 있는 평범한 것인데, A는 자전거 부분품으로, B는 제8531호에 예시된 ‘전기식 벨’에 낫혀 오류를 범하는

5) 필자의 저서 ‘관세율표(2015년 개정판, 세인박스)’ 26쪽에서 관세율표의 주가 호에 우선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것으로 추론한다. 물론 제8531호의 용어에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들 호를 살펴봤다면 정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10) [문항 52]의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다이오드가 결합(부착)한 모듈로 조립된 태양광 패널은 제8541호(광전지 모듈)로 답했다.

정답은 제8501호(발전기)다. 제8541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동력을 전동기 용해조에 직접 공급하는 것과 같은 소자[예를 들면,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다이오드(diode)와 같은 단순한 것일지라도]를 부착한 패널(panel)이나 모듈(module)을 제외한다(제8501호)”는 규정에 근거한 답이다. 다만, 실무에서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HSC)가 접속함 내에 바이패스 다이오드(bypass diode)가 있는 태양광 모듈은 제8541호로 분류했다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모듈형의 태양광 패널이라 해서 제8541호를 제시한 것으로 추론한다.

| 문항 | 질문 내용 | A | B | 정답 | 근거·이유 |
|----|--|--------|--------|--------|-------------------------|
| 51 | 자전거 전용 신호용 기구(예: 전기식 벨) | 제8714호 | 제8531호 | 제8512호 | 호와 소호의 용어 |
| 52 | 전류의 방향을 제어하기 위한 다이오드가 결합(부착)한 모듈로 조립된 태양광 패널 | 제8541호 | 제8541호 | 제8501호 | 제8501호 용어 제8541호 해설서 |

4. 평가와 결론

필자는 이 검증 결과에서 역시 품목분류의 정석은 통칙 제1호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호의 용어에 표기한 물품이나 HS 해설서에 분류 사례가 구체적으로 예시 되고, 잘 알려진 물품(예: 문항 9~11번의 기능단위기계나 복합기계)은 정답을 맞게 제시했다.

그렇지만, 같은 유형의 물품이라도 호의 용어나 주 규정에 따라 두 개 이상의 호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예: 옥수수가루나 전기식 신호용 기구)이나 일반 상식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해당 주에 특례를 정한 물품(예: 쇠고기 조제품, 백금 합금, 스카프)이나 HS 해설서를 검토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는 문항(예: 문항 12번, 문항 52번)의 분류는 오류가 많다.

또한,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분류하는데, 해당 호의 용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거나(예: 제8531호 용어 ‘<전략> … 다만, 제8512호나 제8608호의 것을 제외한다’), 해당하는 부나 류를 찾아 이를 검토한 후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 물품(예: 손수건과 스카프의 분류 기준)도 그렇다.

HS의 결정은 특히 세율 적용과 직결되므로 적은 오류도 허용될 수 없다. 오류율이 각각 42%와 31%에 달한다는 것을 확인했듯이 법적 쟁점이 되는 HS 결정을 SI에 전적으로 맡기기에는 아직도 이르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 검토가 SI에 실망하거나 사용을 회피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비록 우답(愚答)이라도 현답(賢答)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검증과 사실(fact)에 기반을 둔 사용자의 활용 기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에도 AI가 HS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거나 문제 해결의 통찰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비록 AI가 필자의 기대나 언론의 보도보다 높은 오류율을 보였지만, 제공된 내용에 법규적 또는 논리적 오류를 지적했을 때 즉각적으로 정답을 도출하는 능력이 뛰어남을 확인⁶⁾했다. 또한, 특정 문항의 오류를 단계적으로 지적했을 때는 자기의 논리를 고수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으나, 해당 주 규정을 제시하면 최종적으로는 수긍했다는 점도 재미있었다⁷⁾.

필자는 AI에게 정답과 관련 규정 및 분류 방법을 학습시킨 후 정답을 직접 확인하고, AI에게 그렇게 분류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기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학습된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같은 문항을 재검증(2026.1.7.~1.8.)했다. 재검증한 결과 A는 82%, B는 85%의 정답률을 보여 의외의 결과를 얻었다. 오답 대부분은 처음의 HS를 제공하고, 일부는 처음이나 학습한 후의 HS가 아니라 엉뚱한 답을 주는 예도 있는 등 AI의 한계이자 아직도 해결해야 할 기술적 난제가 많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초 자료만 제공해도 상품의 성분이나 제조공정, 사용 용도나 기능 등 HS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추론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췄다는 점이다. 특히 이런 점에서 사용자가 잘 조절하고 검증한다면, 더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들이 알려주는 HS가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는 점이나 오답임에도 마치 정답인 것처럼 소개하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보이는 경향도 있으므로 검증과정 없이 그대로 신뢰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즉, AI 답변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AI에게 관련된 부나 류의 주 또는 소호주, 호와 소호의 용어나 HS 해설서의 제외규정을 확인했는지를 재질문해야 한다. 그리고 분류 기준이 되는 값(성분 비율이나 함유량 등)이나 주 용도, 주 기능 등 HS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도 검토했는지를 다시 확인해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더 정확한 분류가 가능할 것이다. 사람은 반복질문하면 짜증 내지만, AI는 그렇지 않다. 더없이 충직한 조력자다. 그리고 결과의 법적 책임은 사용자가 지므로 AI가 제공한 법령이 최신 법령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결론으로 AI나 각 사(社)가 개발한 에이전트(agent)는 더욱 고도화해 관세사를 돕는 조력자로, 때로는 일자리에서 쫓아내는 악마의 역할을 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AI가 가장 정확한 성과물을 낼 수 있도록 검증하고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관세사는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6) 혹시 이 글을 읽고 동일 문항을 질문한다면, 충분한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정답을 제시할 수 있다.

7) 이런 예가 문항 34번의 '후춧가루 20%, 고춧가루 60%, 생강가루 20%의 비율로 혼합한 물품'이다. A의 첫 답변은 제2103호(혼합 조미료)였다. 추가 질문(각 성분의 HS를 확인하고, 혼합물의 HS를 알려줘)에도 후춧가루 제0904호, 고춧가루 제0904호, 생강가루 제0910호라 하면서도 제2103호라 답했다. 두 번째 추가 질문(제9류 주 제1호 나목을 확인하고, 혼합물의 HS를 알려줘)에도 제9류 주 제1호 나목(향신료 혼합물은 제0910호로 분류)을 확인하고도 제2103호가 맞다고 했기에, 이 혼합물은 제0910호로 분류된다고 질문하니, 이에 수긍하지 않는다고 완강한 의사를 표시했다. 세 번째로 이 혼합물에는 향신료 외 다른 물품이 첨가된 것이 없으니 제2103호로 분류할 수 없다는 주 규정과 소호 제0910.91호(제9류 주 제1호 나목의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시하니, 그때 비로소 제0910호가 맞다고 답했다.

■ HS 검색시스템별 정답 비교표

A와 B가 공통으로 잘못된 답변을 한 사례는 앞서 정답 해설에서 별도로 설명해 아래 표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표의 주석 내용은 검색시스템에서 HS 결정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 중 특이사항을 표시한 것이다(그 내용을 보면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해 오답을 제시한 예도 있다).

| NO | 질문 내용 | A | B | 정답 | 근거·이유 |
|----|---|--------|----------------------|------------------|------------------------------------|
| 1 | 일본 우동에 사용하는 시치미(고춧가루, 오렌지 껍질, 참깨 등) | 제0910호 | 제0904호 제2103호 | 제0904호 제2103호 | 제9류 주 제1호, 사례(고춧가루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2 | 울(wool) 60%과 비스코스레이온 40%의 혼용울로 돼 있는 혼방직물의 표면에 폴리우레탄으로 코팅처리한 직물(코팅 처리한 것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상태)로 만든 여성용 코트 | 제6210호 | 제6210호 ⁸⁾ | 제6210호 | 제62류 주 제6호 소호 용어 |
| 3 | 김 80% 참기름 15%, 소금 5%로 구워서 만든 조미김 | 제2106호 | 제2008호 | 제2008호 | WCO 사례, HSK |
| 4 | 유탕처리한 라면(noddle)과 분말형 수프, 건조한 혼합채소가 1개씩 세트 포장한 물품 | 제1902호 | 제1902호 | 제1902호 | 통칙 제3호 나목 HSK |
| 5 | 인터류킨 주성분으로 만든 주사제(5밀리리터 소매용 앰플 포장) | 제3004호 | 제3002호 | 제3002호 | 제30류 주 제2호 소호 용어 |
| 6 | 금 합금(금 80%, 백금 20%로 구성) 7.5g으로 만든 반지(ring)에 1캐럿 천연 다이아몬드가 장착된 물품 | 제7113호 | 제7113호 | 제7113호 | 제71류 주 제5호, 제9호 |
| 8 | 탄소 함유량 1.05%, 크롬 12%이고 나머지는 철의 성분으로 구성된 직경 3mm의 코일상태의 스테인리스강 선(wire) | 제7217호 | 제7223호 | 제7223호 | 제72류 주 제1호 마목, 하목 |
| 9 | 각각의 변압기와 용접용 헤드로 구성된 기능단위 기기인 전기용접기 | 제8515호 | 제8515호 | 제8515호 | 제16부 주 제4호 HS 해설서 |
| 10 | 각각의 ① 적외선 램프, ② 광전지(photoelectric cell), 벨(bell)로 구성된 기능단위 기기인 전기식 도난경보기 | 제8531호 | 제8531호 | 제8531호 | 제16부 주 제4호 소호 용어 |
| 11 | 담뱃잎을 껍질로 말아 이 껍질을 20개씩 포장하는 기계가 하나의 몸체로 결합한 복합기계 | 제8478호 | 제8478호 | 제8478호 | 제16부 주 제3호 소호 용어 |
| 13 | 소고기 정육 80%에 조미 양념(간장, 설탕, 소금, 후추 등) 20%를 첨가해 불에 구운 바비큐 | 제1602호 | 제1602호 | 제1602호 | 제16류 주 제2호 소호 용어 |
| 14 | 유당(lactose) 함유량이 건조물 기준으로 90%인 유장 분말(whey powder) | 제0404호 | 제1702호 ⁹⁾ | 제0404호 | 제4류 주 제5호 나목, 소호 용어 |
| 15 | 건조한 양파 플레이크(onion flake) 40%, 당근 플레이크 35%, 양배추 플레이크 25%의 혼합물 | 제0712호 | 제0712호 | 제0712호 | 소호 용어 |
| 16 | 옥수수가루 70%, 메밀가루 15%, 감자전분(녹말) 10%, 베이킹파우더 5%의 비율로 혼합된 가루 | 제1901호 | 제1901호 | 제1901호 | 호 용어 |

8) 폴리우레탄(플라스틱의 일종) 코팅이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이 원단은 일반 직물이 아닌 '제5903호의 직물(플라스틱을 도포한 방직용 섬유직의 직물)'에 해당합니다. 코팅 처리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해당 여성용 코트는 HS Code 제6210.30-1000호로 분류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9) 가장 유력한 6단위 HS Code는 제1702.19호이지만, 제0404.10호의 분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NO | 질문 내용 | A | B | 정답 | 근거·이유 |
|----|---|-----------------------|-----------------------|----------------------|-------------------------|
| 17 | 옥수수가루 70%, 메밀가루 15%, 감자전분(녹말) 10%, 베이킹파우더 5%의 비율로 혼합된 가루로 베이커리제품(예: 빵) 제조에 사용 | 제1901호 | 제1901호 | 제1901호 | 호와 소호의 용어 |
| 18 | 석탄콜타르에서 얻은 액상 증류물(210°C에서 80% 증류)로 비방향족 탄화수소 85%, 방향족 탄화수소 15%의 혼합물 | 제2707호 | 제2710호 ¹⁰⁾ | 제2710호 | 제27류 주 제2호 제2707호 용어 |
| 19 | 에틸렌 중합체 45%, 프로필렌 중합체 35%, isobutylene polymer 20%의 비율로 구성된 무색 flake의 혼합 중합체 | 제3902호 | 제3901호 | 제3902호 | 제39류 주 제4호 해설서 |
| 20 | 면직물 100%로 만든 신장이 90cm인 남자 유아용 긴바지 | 제6209호 ¹¹⁾ | 제6203호 | 제6203호 | 제62류 주 제5호 가목, 소호 용어 |
| 21 | 미네랄 울(mineral wool) 또는 글라스 울(glass wool)이라 불리며, 실리카의 함유량 50%, 산화알칼리(산화칼륨이나 산화나트륨) 3%, 산화붕소는 1%인 섬유상태(fiber)의 시트(sheet)로 공업용 단열재로 사용 | 제6806호 | 제7019호 | 제6806호 | 제70류 주 제4호 호와 소호 용어 |
| 22 | 화물트럭용 백미러로 플라스틱 틀에 끼워져 있는 물품 | 제7009호 | 제8708호 | 제7009호 | 호와 소호 용어 |
| 23 | 차량용 백미러로 플라스틱 틀에 끼워져 있는 물품 | 제7009호 | 제8708호 | 제7009호 | 호와 소호 용어 |
| 24 | 초음파를 이용한 금속가공용 선반(lathe) | 제8458호 | 제8456호 | 제8456호 | 제84류 주 제3호 소호 용어 |
| 26 | 자동차용 디젤엔진의 피스톤(6기통) | 제8409호 | 제8409호 | 제8409호 | 제16부 주 제2호 나목, 호와 소호 용어 |
| 27 | 면섬유 100%의 직물로 만든 쿠션커버와 이 쿠션커버에 천연고무 라텍스 폼(foam)이 충전된 가정용 쿠션(완성품) | ① 제6307호 ② 제9404호 | ① 제6304호 ② 제9404호 | ① 제6304호 ② 제9404호 | 호와 소호 용어 호 용어 |
| 28 | 면섬유 100%의 직물을 절단하고 봉제해 만든 쿠션커버(슬라이드파스너가 한 면에 부착) | 제6307호 | 제6304호 | 제6304호 | 호와 소호 용어 |
| 30 | 면섬유 100%의 직물을 절단 봉제해 만든 쿠션커버(슬라이드파스너가 한 면에 부착)에 가황처리하지 않은 천연고무 라텍스 폼(foam)을 쿠션커버의 내장물에 맞도록 타원형 모양으로 성형/절단한 것을 충전한 완성품 쿠션 | 제9404호 | 제9404호 | 제9404호 | 호 용어 |
| 31 | 천연 장미꽃 10송이와 천연 백합꽃 10송이를 다발로 묶어 직물제 리본으로 장식한 꽃다발 | 제0603호 | 제0603호 | 제0603호 | 제6류 주 제2호 |
| 32 | 플라스틱으로 만든 인조장미꽃 10송이와 천연 백합꽃 2송이를 다발로 묶어 직물제 리본으로 장식한 꽃다발 | 제6702호 ¹²⁾ | 제6702호 | 제6702호 | 통칙 제3호 나목 적용, 호와 소호 용어 |

10) 제시된 혼합물은 비방향족 성분이 85%로, **방향족 성분의 중량이 초과되지 않으므로 제2707호에서 제외**.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제2710호와 제3824호 중 어느 것이 최종적으로 더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11) 유아용 기준 충족. HS 제6209호는 일반적으로 신장 86~92cm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용 의류를 포함하므로 90cm는 유아용으로 인정됨.

12) 이 경우 **인조 꽃(10송이)이 수량·비중·가격·내구성 측면에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다고 판단되므로 **인조 꽃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NO | 질문 내용 | A | B | 정답 | 근거·이유 |
|----|---|-----------------------|-----------------------|--------|-------------------------|
| 33 | 건조한 자두(프룬: prune)의 표면에 글루코오스 시럽을 소량(중량기준으로 5%) 첨가한 물품 | 제0813호 | 제0813호 | 제0813호 | 제8류 주 제3호 나목, 호와 소호 용어 |
| 34 | 후춧가루 20%, 고춧가루 60%, 생강가루 20%의 비율로 혼합해 유리병에 50g 단위로 포장한 물품 | 제2103호 | 제0910호 ¹³⁾ | 제0910호 | 제9류 주 제1호 나목, 소호 용어 |
| 36 | 전 중량의 45%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한 양귀비 줄기 농축물(추출물) | 제1302호 | 제2939호 | 제1302호 | 제13류 주 제1호 바목 |
| 39 | 내용물의 건조 중량이 10%인 토마토주스(페이스트) | 제2002호 | 제2002호 | 제2002호 | 제20류 주 제4호 |
| 40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병(pet bottle)을 사용 후에 회수해 알갱이 모양으로 변형(화학적 처리와 열처리)한 물품 | 제3915호 ¹⁴⁾ | 제3907호 | 제3907호 | 제39류 주 제7호 소호 용어 |
| 41 | 염화비닐수지(가로×세로: 60×60cm)의 정사각형으로 두께가 0.5cm로 가정용의 바닥 깔개 | 제3918호 | 제3918호 | 제3918호 | 호와 소호 용어 |
| 42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로 만든 식탁용품(예: 장반) | 제4419호 | 제4420호 | 제4419호 | 제44류 주 제3호 호의 용어 |
| 43 | 벨벳 파일직물을 별 모양으로 재단(지름 5cm)해 어린이용 의류로 봉제해 사용할 물품(의류 부분품) | 제6217호 | 제6217호 | 제6217호 | 호와 소호 용어 |
| 45 | 갑피가 전부 가죽이고, 바깥 바닥은 전부 고무인 남성용 사이클화 | 제6403호 | 제6403호 | 제6403호 | 제64류 소호주 제1호와 소호 용어 |
| 46 | 시멘트와 모래, 점토를 1.5:1:0.5의 비율로 혼합해 물로 반죽해 직사각형(가로×세로×두께: 30×20×15cm)으로 성형해 만든 벽돌을 700°C에서 구워 만든 건축용 벽돌 | 제6810호 ¹⁵⁾ | 제6904호 | 제6810호 | 제69류 주 제1호 나목, 호와 소호 용어 |
| 47 | 단조에 적합하고 탄소의 함유량이 1.8%이고 철의 함유량이 98.2%인 알(L) 형강 | 제7216호 | 제7216호 | 제7216호 | 제7216호 용어 제72류 주 제1호 라목 |
| 48 | 공칭 지름에 대한 최대 오차가 0.08mm인 연마강구 (polished steel ball) | 제8482호 제7326호 | 제7326호 | 제7326호 | 제84류 주 제7호 |
| 49 | 알루미늄으로 만든 압축가스용 용기에 부수적으로 가스의 공급을 적절히 조절하기 위한 소형 밸브가 결합한 물품 | 제7310호 ¹⁶⁾ | 제7613호 ¹⁷⁾ | 제7613호 | 제7613호 용어, 통칙 제3호 나목 |
| 50 | 절연 물질(예: 고무)로 개별 피복한 광섬유케이블과 전기 접속자(connector)가 결합한 물품 | 제8544호 | 제8544호 | 제8544호 | 호와 소호 용어 |
| 53 | 시계와 결합된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 | 제8527호 ¹⁸⁾ | 제8527호 | 제8527호 | 호와 소호 용어 |

- 13) 제09류의 주 규정 제1호 나목에 따르면: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 중 두 가지 이상의 다른 호(Heading)에 해당하는 물품을 혼합한 것은 제0910호에 분류한다."
- 14) 단순 회수 후 알갱이로 변환한 한 경우 제3915.10호, 화학적 재처리(예: depolymerization) 후 원료 수준으로 완전히 재합성하면 HS 제3907호(폴리에스터 수지) 적용 가능
- 15) 점토 비중이 많아 주재료가 점토면 HS 제6904.90호, 소성 온도 700°C는 HS Code 결정에는 직접적인 영향 없음.
- 16) 밸브가 결합된 경우 HS 규정상 밸브가 부착된 압력용기도 여전히 압력용기로 분류됩니다. 밸브는 용기의 기능을 보조하는 부속품으로 간주돼 HS 제7311호 변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17) 용기에 결합된 밸브(Valve, 보통 제8481호에 분류)는 이 물품에서 용기의 부속품 또는 필수 결합 부품으로 간주돼, 용기와 분리되지 않고 용기와 함께 하나의 물품으로 분류됩니다(복합 물품 분류의 원칙 적용).
- 18) 시계와 결합: 부수적 기능(시계) 혹은 주된 기능이 시계인지 라디오인지 판단 필요. 시계는 부가 기능으로 HS 분류에서 주된 기능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 NO | 질문 내용 | A | B | 정답 | 근거·이유 |
|----|--|--|-----------------------|------------------|------------------------------------|
| 54 | 불도저와 화물트럭에 모두 사용 가능한 브레이크 시스템(brake system) | 제7326호 제6813호 제8413호 등) ¹⁹⁾ | 제8708호 ²⁰⁾ | 제8431호 제8708호 | 제17부 주 제3호 주 용도 확인 통칙 제3호 다목 |
| 55 | 5인승 승용자동차 새시에 운전실(cab)과 원동기(엔진)를 부착한 상태의 불완전 승용자동차 | 제8703호 | 제8703호 ²¹⁾ | 제8703호 | 제87류 주 제3호 |
| 56 | 음성 재생기가 결합된 영화용 영사기 | 제9007호 | 제9007호 | 제9007호 | 호와 소호 용어 |
| 57 | 군수용의 인명 살상용의 박격포(무기)에 전용되는 삼각대 | 제9305호 | 제9305호 | 제9305호 | 호와 소호 용어 |
| 58 | 식탁용 테이블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리석을 타원 형으로 절단하고, 식탁 프레임에 고정하기 위한 강철 브래킷(bracket)이 결합한 상태인 물품 | 제6802호 | 제6802호 ²²⁾ | 제9403호 | 제94류 주 제3호 가목 |
| 59 | 크라운(crown) 일부분만 백금을 사용한 시계 케이스로 만든 손목시계(전기구동식으로 스톱워치 기능은 없음) | 제9102호 | 제9102호 ²³⁾ | 제9102호 | 제91류 주 제2호 |
| 60 | 인조나무와 각종 조명기구로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 | 제9505호 | 제9505호 | 제9505호 | 호와 소호의 용어 |

19) 전용성이 없어 제8708호나 제8331호로 분류 불가능

20) **검용(모두 사용 가능)의 경우:** 문의하신 브레이크 시스템은 "불도저와 화물트럭에 모두 사용 가능"하므로, **특정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제87류의 차량(화물트럭)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품인 **제8708호**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1)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의 가목에 따라, 불완전하거나 미완성된 물품이라 하더라도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완성된 물품과 같은 호에 분류**됩니다. 제시된 조건인 "5인승 승용자동차 새시에 운전실(cab)과 원동기(엔진)를 부착한 상태"는 차량의 본질적인 특성(이동 수단, 인원 수송용)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2) 대리석 상판은 **독립된 석판 제품(제6802호)**으로 취급되고, 단순 금속 브래킷 결합은 본질적 성질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9403.90호(가구 부품)**가 아니라 **제6802호** 그대로 유지됩니다.

23) 전기구동식이며, 일부 구성품(크라운)에 소량의 백금이 포함돼 있어도 케이스 전체가 귀금속이 아니므로 HS 제9101호가 아닌 HS 제9102.99호로 분류됩니다.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해석(제20류 주 규정)

홍재상 | 예술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 협정명 | 한·미 FTA |
|---|--|
| <p>다음 물품을 생산할 때 한·미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제20류 주' 적용과 관련해 원재료 '팥'은 볶아서 조제 저장 처리한 것이 아닌 경우[주요 공정은 '찐(steam)' 것임]에도 '팥'이 역내산이어야 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 : 농산물 통조림(팥 통조림)(HS Code : 제2005.51호) - 용도 : 팥빙수용 및 간식용 | <p>질문</p> <p>■ 한·미 FTA 부속서 6-가 품목별 원산지 기준 제20류 주</p> <p>냉동하거나, 물·간수 또는 천연주스에 넣어 포장(캔포장 포함)하거나, 또는 건조상태 또는 기름에 넣어 볶아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냉동, 포장 또는 볶음의 부수적인 공정을 포함한다) 제2001호 내지 제2008호에 해당하는 과실·견과류 및 채소 조제품은 신선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p> <p>'제20류 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되는 신선상품이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p> <p>답변</p> <p>제품은 HS 제2005.51호 물품으로, 원재료를 증기에 찌서(steam) 생산하는 것이며, 생산된 제품인 통조림을 살균(가열살균)한 다음 상온으로 열을 식히는 것으로 냉동한 제품도 아닙니다. 따라서 볶아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것이 아니며, 냉동한 제품도 아니므로 사용되는 신선상품이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p> |

2. FTA 원산지 판정

(1) 개요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원산지 규정은 경제적 국적(economic nationality)을 의미한다.

한·미 FTA에서 원산지 상품 요건을 제6.1조(원산지 상품)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완전생산기준), 나.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1)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 또는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기준을 거치거나, 2) 상품이 부속서 4-가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역내가치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

시키며, 그리고 제6장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불완전 생산품,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다.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원산지 재료 생산품)”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충족)한다.

실무상 협정에 따른 원산지 규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해당 협정에 존재하는 ‘다’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을 충족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PSR은 크게 세번변경기준(CTC,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on), 가공공정기준(Processing Operation Criterion) 등을 적용한다. 농축수산물은 PSR 중에서도 완전생산기준(WO, Wholly Obtained Criterion)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에서는 한·미 FTA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제20류 주 규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2) 한·미 FTA의 PSR과 불인정공정기준

한·미 FTA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에서는 각 HS Code별로 원산지 상품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는데, 이에 대한 전제는 협정에서 규정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통해 물품을 생산하는 것에 있다. 협정에서 비원산지 상품 또는 비원산지 재료란 제6장에 따라 원산지 상품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상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만약 비원산지 재료 없이 물품을 생산한다면 완전생산기준 또는 누적을 적용한 원산지 재료 생산품 규정을 적용해 역내산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호의 대상이 되는 제20류에는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7류·제8류·제11류나 관세율표의 다른 곳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그 밖의 가공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된다고 보면 된다.

한·미 FTA에서 제20류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대부분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Change of Chapter)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호 대상인 제2005호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HS Code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
|---------------|---|
| 제2001호~제2007호 |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20류 주에 규정된 것과 제0701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2001호 내지 제200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

제0701호에는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해당 물품은 원산지 재료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본 물품은 껍을 가공한 물품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CC 외에 고려해야 하는 규정은 제20류 주에 관한 사항인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0류 주

냉동하거나, 물·간수 또는 천연주스에 넣어 포장(캔포장 포함)하거나, 또는 건조상태 또는 기름에 넣어 볶아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냉동, 포장 또는 볶음의 부수적인 공정을 포함한다) 제2001호 내지 제2008호에 해당하는 과실·견과류 및 채소 조제품은 신선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더욱이, 복숭아, 배 또는 살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과실과 혼합되어 포함되어 있는 제2008호에 해당하는 과실 조제품은 복숭아, 배 또는 살구가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결국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 규정된 물품은 대부분 비원산지 재료를 통해 생산된 물품들에 관한 규정이지만 특정 물품의 원산지 판정 시에는 소요되는 일부 원재료가 완전생산될 것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번에는 복숭아, 배, 살구 등 과실에 관한 주 규정은 다루지 않고, ① 냉동(freezing), ② 물·간수 또는 천연 주스에 넣어 포장(캔포장 포함)[by packing (including canning) in water, brine, or natural juices], ③ 건조상태 또는 기름에 넣어 볶아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냉동, 포장 또는 볶음의 부수적인 공정을 포함한다)(by roasting, either dry or in oil (including processing incidental to freezing, packing, or roasting) 과실·견과류 및 채소 조제품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한다.

주 규정에서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 규정을 충족해야만 신선상품(fresh good)이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할 때도 원산지 상품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이는 과실·견과류 및 채소가 비원산지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한·미 FTA에서의 충분가공원칙 및 불인정공정기준 또는 실질적 변형기준과 유사한 규정이 도입됐다고 보인다.

충분가공원칙은 물품이 생산될 때 역내에서 충분한 공정을 거쳐 생산돼야 한다는 기준이다. 원산지라는 개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충분한 제조·가공이 수행돼야만 해당 국가가 원산지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한·EU FTA에서는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5조(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제품)에서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제품은 부속서 2의 목록(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또는 부속서 2-가(부가규정)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충분하게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분히 가공’이라는 표현은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물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공정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각 FTA에서 정한 품목별 기준과 일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즉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을 충족한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충분가공원칙은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협정에서는 ‘불인정공정’ 기준을 두고 있다. 해당 규정은 품목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공정의 수행 결과라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협정에서는 충분히 가공됐는지 여부를 세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규정된 것이다.

한·미, 한·캐나다 FTA를 제외하고 나머지 협정에서는 불인정공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 협상 당시 불인정공정을 도입하려 했으나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결국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한·미 FTA에서는 제1류 내지 제40류에 대해, 상품의 특성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물 또는 다른 물질로 단순히 희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등 일부 불인정공정기준을 도입했고,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서도 제20류 주와 같은 규정을 도입하면서, 품목별로 관련 공정에 대한 기준을 정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해당 주 규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원산지 판정 대상 물품이 ① 제20류 주 규정에서 정하는 공정을 수행해 주 규정 적용 대상 물품인지를 확인하는 것과, ② 제20류 주 규정에서 정하는 공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3. 질문 & 답변의 해석

(1) 질문 & 답변 사례 개요

질문에서는 쥘(steam) 농산물 통조림(팥 통조림, 제2005.51호) 원산지 판정 시 제20류에 주 규정을 적용해 팥이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한 역내산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제20류 주에서는 ① 냉동(freezing), ② 물·간수 또는 천연주스에 넣어 포장(캔포장 포함)[by packing (including canning) in water, brine, or natural juices], ③ 건조상태 또는 기름에 넣어 볶아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냉동, 포장 또는 볶음의 부수적인 공정을 포함한다)[by roasting, either dry or in oil (including processing incidental to freezing, packing, or roasting)] 과실·견과류 및 채소 조제품은 신선상품이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고, 적용 대상은 제2001호 내지 제2008호다.

이에 따라 HS Code 기준상 관정 대상 물품은 제2005호에 분류되기 때문에 주 규정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주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 신선한 과일·견과류 및 채소는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도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주 규정 적용 대상이라면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한 신선상품으로 생산된 상품이어야 원산지 상품이 될 것이다.

(2) 답변 내용의 해석

제20류 주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냉동, 물·간수 또는 천연주스에 넣어 포장, 건조상태 또는 기름에 넣어 볶아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냉동, 포장 또는 볶음의 부수적인 공정을 포함한다) 물품이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원산지 관정이 용이하기 위해서는 일부 물품에 대한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는 제20류의 주 규정에 해당되는 물품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주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주 규정에서 규정된 공정으로 제조가 이뤄지지 않은 제20류 조제품은 주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주 규정에서 규정된 공정 이상의 공정이 수행된 경우 주 규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답변에서는 첫 번째 의미에서 원산지 관정 대상 물품인 팥 통조림이 제20류 주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해당 물품은 원재료를 증기에 찌서(steam) 생산하는 것이며, 생산된 제품인 통조림을 살균(가열살균)한 다음 상온으로 열을 식히는 것으로 냉동한 제품도 아닌 것이다. 따라서 볶아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이 아니며, 냉동한 제품도 아니므로 사용되는 신선상품이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고 있다.

제20류 주 규정에 관한 해석은 한국원산지정보원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해당 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

| 제20류 주 규정상 공정 | 사례 |
|---------------|--|
| 냉동 | <p>향신료, 감자가루나 과일과 견과류의 가루 또는 제12류의 특정상품을 냉동 → 제20류 주 규정이 적용돼 신선상품에 대한 완전생산기준 적용 필요함.</p> <p>제2004호에 분류되는 냉동채소 → 냉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005호에 분류하는 것 → 제2005호로 분류되기 위한 조제나 보존 처리를 한 후에 추가 냉동한 제품은 다른 제20류 주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냉동'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p> |

1) 오수교, 2015, 『FTA와 품목분류』 한-미 FTA 품목별원산지기준 제20류 주 규정 해설, <FTA 무역리포트> vol.2(통권 10호), p120~128.

| 제20류 주 규정상 공정 | 사례 |
|---|---|
| 물·간수 또는 천연주스에 넣어 포장 (캔포장을 한 것 포함) | <p>올리브 조제품이 소다용액과 같은 화학물질이나 시럽 또는 알코올과 같은 용액에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 → 제20류 주 규정 적용되지 않음. 다만, 염수에만 침지했다면 제20류 주 규정을 적용함.</p> <p>염(소금)에 절여서 일부 발효된 사우어크라우트 → 염(salt)에 절인 것은 염수(brine)에 넣은 것과는 다르며 발효도 이뤄짐 → 제20류 주 규정 적용될 수 없음(견해).</p> |
| 건조 상태 또는 기름에 넣어 볶아서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냉동, 포장 또는 볶음의 부수적인 공정을 포함) | <p>아몬드(almond)·땅콩·빈랑나무(areca 또는 betel)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식물성 기름·식염·향미(香味)료·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볶는 중이나 볶은 후에 식염·향미(香味)료·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예: 설탕이나 꿀)을 입힌 것은 제20류 주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p> <p>볶은 땅콩을 잘게 부수어 만든 페이스트(paste)로 구성된 ‘땅콩버터(peanut butter)(소금이나 기름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상관없다)’ → 분쇄라는 추가적인 공정이 수반됐으며 제20류 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p> |

우리나라의 원산지 사전심사에서도 제20류 주 규정에 대한 사례가 있다.

첫 번째로 NUT MIX(KS CASHEW CLUSTER) 제품(제2008.19호)은 제20류 주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심사했다. 신청물품은 역외산 캐슈너트, 호박씨와 역내산 아몬드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해 수출당사국인 미국 영역 내에서 건조상태로 볶음공정 등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으로 한·미 FTA 부속서 6-가의 제20류 주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 이상이 수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제20류 주석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두 번째로 NUTS PREPARATIONS(BUTTER TOFFEE CASHEWS) 제품(제2008.19호) 또한 제20류 주 규정의 적용 대상 여부를 심사했다. 신청물품은 역외산 캐슈너트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해 수출당사국인 미국 영역 내에서 건조상태 또는 기름에 넣는 볶음공정 등을 통해 생산되는 제품으로 한·미 FTA 부속서 6-가의 제20류 주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 이상이 수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제20류 주석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즉 해당 물품들은 건조 상태 또는 기름에 넣어 볶아서 조제하거나 보존 처리한(냉동, 포장 또는 볶음의 부수적인 공정을 포함한다)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있어, 주 규정에서 정한 공정 이상의 공정을 거쳤는지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사례로 채소 조제품(제2004.90호)의 원산지 사전심사 건에서는 한·미 FTA에 따른 제20류 주 적용 대상 및 원산지 상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논의됐다. 신청물품은 제20류 주석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생산에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특정 공정만 수행해 생산되는 경우, 제품에 투입된 과실 견과류 채소가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며, 신청물품은 역외산 원재료로

‘데치기’, ‘조미’ 등 단순 공정을 수행해 생산된 제품이므로, 제20류 주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 이상이 수행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한·미 FTA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

채소 조제품 사례는 제20류 주 규정 중 어떤 규정에 따라 제20류 적용 대상이 됐는지 확인이 불가하나 제2004호[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라는 사유만으로 제20류 주 규정상 ‘냉동한 것’으로 봐 신선상품에 대한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물·간수 또는 천연주스에 넣어 포장(켄포장을 한 것 포함)’에 해당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해당 제품은 ‘데치기’, ‘조미’ 등 단순 공정을 수행해 생산된 제품이기 때문에 제20류 주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됐다고 판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한·미 FTA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 관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uling 사례를 검토하겠다.

먼저 한·미 FTA 사례 중 혼합 견과류(제2008.19호)에 관해 검토²⁾하면, 한국의 수출자는 인도, 베트남, 브라질산 건조 캐슈넛과 볼리비아, 페루산 건조 브라질넛, 아몬드, 마카다미아, 피칸을 땅콩기름으로 볶고 소금을 넣어 조제했다.

미국 CBP는 이 혼합 견과류가 대한민국 또는 미국 내에서의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미 FTA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신청인은 이에 대한 재검토(Reconsideration)를 요청한 것이다.

핵심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신청인은 먼저 ① 비원산지 재료인 견과류가 수입될 당시 이미 ‘건조된(dried)’ 상태였으며, 규정에서는 명확히 ‘신선한(fresh)’ 제품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20류 주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② 신청인은 NY 228118을 인용했는데, 해당 사례에서 미국 CBP는 NAFTA 비체약국에서 캐나다로 수입된 생 캐슈넛(raw cashew nuts)에 소금을 첨가·볶음(roasting 및 salting) 처리를 한 경우, 이를 NAFTA상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고 특혜관세 적용 대상이라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본 혼합 견과류도 동일한 공정을 거쳤으므로 한·미 FTA에 대한 특혜관세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CBP는 과일·견과류·채소류 제품이 냉동, 포장 또는 볶음 등의 방법으로 가공·보존된 경우, 그 원산지는 ‘신선한(fresh)’ 상태(냉동, 포장, 볶음 전의 상태)의 원재료 원산지에 의해

2) HQ H243328(2013.8.19.)

결정되며, 견과류가 수입 시점에 건조된 상태였는지는 이 규정에서 고려되지 않으며, 또한 소금을 치거나(salting) 볶음의 부수되는 공정(processes incidental to roasting)도 제20류 주 규정 이상의 공정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NAFTA에 관한 3가지 사례³⁾를 함께 살펴본다.

제시 제품은 ① Mixed Nuts Roasted and Salted, ② Macadamia Nuts Roasted and Salted, ③ Cashew Nuts Roasted and Salted다.

해당 제품들은 비원산지 재료인 견과류가 캐나다 내에서 오일에 볶아지고(oil roasted) 별도로 소금 처리(salted)된다. NAFTA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Fruit, nut and vegetable preparations of chapter 20 that have been prepared or preserved merely by freezing, by packing (including canning) in water, brine or natural juices, or by roasting, either dry or in oil (including processing incidental to freezing, packing, or roasting), shall be treated as an originating good only if the fresh good were wholly produced or obtained entirely in the territory of one or more NAFTA parties.

해당 규정에 따라 해석하면 NAFTA 영역 내에서 비원산지 견과류로 단순히 볶거나, 볶음에 부수된 경미한 공정을 거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한·미 FTA에는 없는 표현이지만, NAFTA에서 ‘merely(단순히)’라는 용어는 사전적 의미로는 “언급된 그 자체에 불과하며 그 이상은 아니다[only (what is referred to) and nothing more]”를 뜻하며, 이는 해당 규정에 언급된 공정만으로는 비원산지 견과류를 생산하면 원산지 상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며, 결국 NAFTA 국가 영역에서 단순 공정을 넘은 ‘충분한 가공(sufficient processing)’을 거쳤을 때 원산지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Incidental(부수적인)’이라는 용어는 협정상 명확한 정의가 없는데,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본질적인 부분을 이루지 않는 어떤 다른 공정과 우연히 혹은 종속적으로 결합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것(occurring or liable to occur in fortuitous or subordinate conjunction with something else of which it forms no essential part)”을 의미하며, 이 의미를 볶음에 적용하면, 볶음(roasting)과 함께 또는 그에 부수해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이지만, 볶음 자체보다 부차적이며 중요도가 낮은 절차를 말한다라고 봤다.

CBP는 소금을 치는(salting) 공정이 그러한 부수적(procedurally incidental) 공정의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salting 공정은 볶음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캔포장

3) HQ H256784, HQ H256783, HQ H256781(2015.12.28.)

(canning)이나 냉동(freezing) 공정에서도 종종 이뤄지는 반면, 제품을 실제로 가공하는 핵심적인 단계는 볶음, 캔포장, 냉동이며, 제품의 본질적 성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CBP는 다른 향료나 향신료, 기타 재료를 첨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단순한 공정이라고 봤다.

또한 제2008호 해설에 나오는 아몬드(almond)·땅콩·빈랑나무(areca 또는 betel)의 열매와 그 밖의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 기름이나 지방으로 볶은 것[식물성 기름·식염·향미(香味)료·향신료나 그 밖의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에서의 소금(식염)에 관한 사항은 볶음의 유형(dry-roasted, oil-roasted 등)을 설명하는 문맥에서 제한적으로 언급된 조제(preparation)나 보존(perservation)의 주요 공정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봤다.

즉, 소금은 볶음 과정 중 또는 그 결과로 첨가될 수 있지만, 소금 처리 여부 자체는 가공 과정에서 본질적이지 않으며, 가공의 핵심은 볶음(roasting)이며, “냉동, 포장 또는 볶음 과정의 부수적인 가공(processing incidental to freezing, packing or roasting)”에 “소금을 치는 것(salting)”이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추가적인 공정[기타 첨가물 혼합(mixing with other ingredients), 체질(screening), 공기흡입(aspiration), 냉각(cooling), 소형 포장(packaging)]에 대한 사항도 검토됐는데, 특히 “다른 첨가물과의 혼합(mixing with other ingredients)”에 대해서는 제2008호 해설서상 향미(香味)료(flavours)·향신료(spices)나 그 밖의 첨가물(other additives)을 입히는 것에 대해 식염(salt)과 동일한 범주에서 언급하고 있으므로 똑같이 부수적인 공정으로 봐야 하며, 냉각(cooling)은 볶음 후 자연스럽게 온도가 낮아지는 부수적 공정이므로 부차적인 단계이며, 체질(screening)과 공기흡입(aspiration) 역시 볶음 결과물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는 절차로 본질적으로 볶음에 부수적인 공정이라고 봤다.

다른 첨가물과의 혼합에 관해서는 앞서 소개한 국내 자료의 해석과 차이를 보인다. 미국의 경우 제20류 주 규정을 적용하는 데 더욱 엄격한 판단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Salad Topper에 관한 사례⁴⁾를 살펴본다. 해당 사례는 ‘해바라기씨가 과일(fruit)인가’라는 품목분류 쟁점이 있지만, 이는 생략하고 원산지 판정에 관한 사항만 다루겠다.

신청인은 해당 물품이 제20류에 분류되더라도 ‘볶음(roasting)’ 및 ‘볶음에 부수되는 공정(processing incidental to roasting)’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물품은 ① 중국산 생 호박씨(raw pumpkin seeds)는 ‘열풍 건조 오븐(dry, hot-air

4) H286682(2018.1.31.)

oven)’에서 굽고(baked) 그 뒤 공기 여과식 냉각 설비(filtered air cooling system)로 건조한다. 그 후 ② 조리(cooking) 과정을 거치고, ③ 해바라기씨가 조리된 후 냉각(cooling)되는 단계에서 타마리 소스(tamari sauce)가 추가돼 ‘추가적 조리(additional cooking process)’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볶음(roast)’의 의미는 “마른 열(dry heat)에 노출시켜 조리하는 것(예: 오븐 또는 화로에서) 또는 뜨거운 숯, 모래, 돌 등으로 둘러싸서 익히는 것(to cook by exposing to dry heat(as in an oven or before a fire) or by surrounding with hot embers, sand, or stones)”이며, 굽기(baking)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이는 볶기(roasting)와의 차이가 없고, 열풍에 노출시켜 조리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봤다.

볶음에 ‘부수되는 공정(processing incidental to roasting)’ 또한 그 범위에 포함되며, 이전 사례⁵⁾에 따르면 ‘incidental(부수적인)’이란, “냉동(freezing)·포장(packing)·볶음(roasting) 공정 중 하나와 함께 또는 그 결과로 발생할 수 있지만, 이들보다 부차적이거나 중요도가 낮은 공정을 의미(“incidental” indicates a process that may happen with or as a result of freezing, packing, or roasting, but is secondary to or of lesser importance than these processes)”하며, “식염, 향미료, 향신료 또는 그 밖의 첨가물 등의 시즈닝을 추가하는 것(addition of seasoning)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공정”이라 지적하고, 이러한 혼합 행위(mixing with seasoning)는 ‘부수적 가공(incidental)’에 해당한다고 판단(“the addition of seasoning like salt, other flavors, spices, or other ingredients is, comparatively, a simple process.” CBP therefore held that mixing with seasoning is a type of lesser processing that qualifies as ‘incidental’)했다.

또한 해바라기씨가 냉각되는 동안 타마리 소스를 첨가하는 공정은 향료, 소금, 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추가하는 것과 동일한 성격의 단순 공정에 해당되며, 이는 볶음에 부수되는 공정에 해당된다고 봐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미 FTA 목적상 적용되는 제20류 주 규정은 볶음 등 이상의 추가공정을 수행해야 비원산지 재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례가 많지만, 미국에서는 그 요건을 보다 더 엄격히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 변형이 있는 추가적인 공정이 없는 이상 견과류 등에 대한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제20류 주 규정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 보수적인 입장에서 해석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원산지 판정 및 특혜관세 적용 시에는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HQ H270451(2017.1.14.)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다만 제공하는 사례는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품목분류 / 올레오레진의 HS Code

올레오레진 파프리카의 품목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문의하신 물품이 '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concrete)와 앵설루트(absolute)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냉침법(冷浸法)이나 온침법(溫浸法)에 따라 얻은 것으로서 유지·비휘발성 유·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媒質)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의 '기타'에 해당된다면 제3301.90-4800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3301호 해설서에서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 상거래 관습상 ‘조제된 올레오레진(prepared oleoresin)’이나 ‘스파이스 올레오레진(spice oleoresin)’으로 알려져 있는 추출한 것으로서 유기용제 추출이나 초임계액체 추출에 의해 천연의 다포성(多泡性) 식물원재료[보통 향신료나 방향성(芳香性)식물]로부터 얻는다. 이들 추출물에는 향신료나 방향성(芳香性)식물의 향기·맛의 특성을 나타내는 휘발성의 향기소[예: 정유(essential oil)]와 비휘발성의 향미소[예: 수지·지방유·매운 성분]를 함유하고 있다. 이들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중 정유의 함유량은 향신료나 방향성(芳香性) 식물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 이들 물품은 주로 식품공업에 향료로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만약 문의하신 물품이 파프리카에서 추출한 올레오레진에서 매운맛 성분 등을 제거한 파프리카 추출색소라면,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식물성 착색제’에 해당된다면 제3203.00-1000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 |
|------|----|------|---|
| 3301 | | | 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concrete)와 앵설루트(absolute)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냉침법(冷浸法)이나 온침법(溫浸法)에 따라 얻은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媒質)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
| | 90 | | 기타 |
| | | 4800 | 기타 |
| 3203 | | |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
| 3203 | 00 | 1000 | 식물성 착색제 |

수입요건 / 식빵 슬라이서의 수입요건

제8438-10-1000호에 분류되는 식빵 슬라이서의 수입요건은?

제8438.10-1000호 ‘베이커리 기계’로 분류되는 식빵 슬라이서를 수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세관 장확인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특수통관 / 통관 실패

통관조회한 결과 ‘통관 실패, 물건 없음(미착)’이라고 나온다면 어떤 상황인가요?

문의하신 화물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조회한 결과 삭제된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으로, B/L 이 삭제된 사유는 미착상품(실제 물품이 우리나라에 반입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미착 상품이라면, 판매자 측에 선적 여부 및 재발송, 환불 등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직구 시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전적으로 운송(특송)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어 배송 지연, 수입신고 사항, 개인정보 수정 등 관련 사항은 운송업체 또는 운송업체의 통관 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자세한 신고내역 및 일정 등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스누스(SNUS)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잇몸 담배’, ‘머금은 담배’, ‘입담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스누스(SNUS)는 일반 담배와는 다른 독특한 사용법과 특징이 있다.

스누스는 입에 넣어 니코틴을 흡수하는 무연 담배로 북유럽에서 시작된 흡연 대체품이다. 스웨덴에서 시작된 스누스는 흡연 대체제로 주목받았는데, 입에 넣고 사용하는 방식 덕분에 연기나 냄새가 없어 실내 사용이 용이하다.

스누스는 흔히 ‘잇몸 담배’ 또는 ‘머금은 담배’라 불리기에 ‘씹는담배’와 혼동되기도 하지만, 약간 다르다. 씹는담배는 주로 미국에서 유래하며 침을 뱉어야 하지만, 스누스는 침을 뱉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아 더 깔끔하게 느껴진다. 스누스는 상부 잇몸과 입술 사이에 넣어 사용하며, 평균적으로 20~40분간 유지할 수 있다.

스누스는 연기가 없어 간편하지만, 니코틴 농도가 강해 초보자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갈색계 파쇄된 식물엽을 파우치에 충전한 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경구용 니코틴 함유물품’에 해당하는 제2404.91-0000호로 신고했다.

제2404호는 ‘담배·재구성한 담배·니코틴이나 담배 대용물·니코틴 대용물을 함유한 물품(연소시키지 않고 흡입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한다), 니코틴을 함유한 그 밖의 물품으로 인체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을 분류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B) 그 밖의 물품으로서, **니코틴을 함유하지만 담배나 재구성한 담배를 함유하지는 않으며**, 흡입 이외에 씹기·용해·코로 들이마시기(sniffing)·경피(經皮) 흡수나 그 밖의 다른 수단에 의해 인체(人體) 내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을 설명하고 있다.

제2404호에는 **니코틴을 함유하는 물품을 분류**하며, 담배나 재구성한 담배는 포함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담배의 식물엽을 파쇄해 만든 본 물품의 경우 제2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다.

관세율표 제2403호에는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se)’가 분류되며, 제2403.99-4000호에는 ‘입안에 머금은 담배(예: 스누스)’를 특개하고 있다.

본 물품은 파쇄된 담배잎으로 만든 입안에 머금은 담배(스누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403.99-4000호에 정정 분류했다.

| 신고품명 | 신고세번(세율) | 회보품명 | 정정세번(세율) |
|-------------------------------|------------------------|---|-------------------------|
| PRODUCTS FOR ORAL APPLICATION | 2404.91-0000 (A 8%) | Tobacco holding in one's mouth(for example, Snus) | 2403.99-4000 (A 40%) |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3월
발간 예정

관세·무역 실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준

-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FTA 연차세율 반영
 - 24개 FTA(CEPA, SECA 포함), WTO 협정 등 반영
 - 한·UAE CEPA, 한·에콰도르 SECA 신규 수록(미발효)
 - 한·EU, 한·영국 FTA 상·하반기 세율 반영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및 간이징액환급률표 개정사항 수록
- 통합공고 및 기타세율 규정, 내국세법 등 주요 개정사항 반영

도서구매 문의 및 온라인 구매처

Tel : 02)3416-5112 / Fax : 02)3442-2840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www.kctdi.or.kr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 smartstore.naver.com/kct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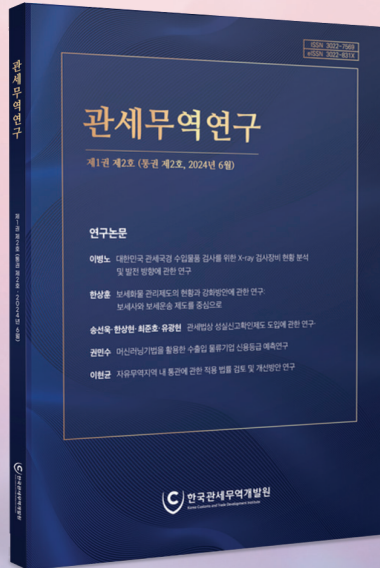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관세 무역 분야 학술·정책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

(Korea Customs Review)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행정 및 무역 정책 수립·발전에 기여할 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관련 학술활동 진흥을 도모하고자 전문 학술지 「**관세무역연구(Korea Customs Review)**」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매년 4회(3·6·9·12월) 발간**
- ✓ **게재 결정된 논문 투고자에게 연구지원금 지급**
- ✓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 무역실무, 무역이론, 국제경영 등
- ✓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 통관, 심사, 조사, 국제협력, 정보데이터 등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논문모집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전문도서관

전자도서 서비스

60여년 축적한 관세·무역 전문 도서를
이제 온라인에서 바로 열람하세요!

이용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

<https://library.kctdi.or.kr>



모바일 앱 서비스 지원

(구글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관세/무역 자료 원문 열람



개발원 발행 자료의
창간호 ~ 최신호까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행 자료 포함,
도서관 소장 2,500여건의 원문자료 제공!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